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나주시 정기종합감사 -

2022. 1.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나주시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나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18년 11월부터 '21년 9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조직·인사관리,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10. 18.부터 10. 29.까지 감사인원 17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B+C +D+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경고 (E)
					계 (A =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 처분의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51	14 (25명)	1 (2명)	13 (23명)	35	16 (895)	8 (895)	2 (43)	2 (135)	1 (27)	3 (690)	8	13	2	4	—	2	—	

2. 주요 지적사항

① 지방보조사업 관리·감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 위 시(기획예산실 등)는 '18. 11월부터 '21. 9월까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을 편성·지원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른 보조사업의 부적정 추진

-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등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 한편 위 시(기획예산실)는 지방보조금, 재원분담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위 시(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는 '19. 11월에 나주○○○○○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억원에서 보조사업자가 1억 7,500만원(87.5%)을 부담하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기획예산실로부터 통보받았는데도
 - 보조사업자가 1억 7,500만원을 부담하지 않은 채 보조금 2,500만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5개 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4억 5,809만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치

- 그로 인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무력화되어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우려를 초래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등에 시장은 전문가 등 민간 위원, 공무원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한편 위 시(기획예산실)는 ‘18. 6월부터 ‘21. 5월까지 민간 위원 10명, 공무원 위원 4명 등 총 14명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 그런데 위 시(기획예산실)는 ‘19. 4월 민간위원(1명)의 사직으로 공무원 위원 수(4명)가 전체위원의 1/4을 초과하였는데도 민간위원 위촉 또는 공무원 위원을 감축하지 않은 채 19차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 그로 인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로 보조금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

☞ 관련부서에 앞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도록 “주의요구”

② 근무성적평정 감점제도 부당 운영

- 위 시(총무과)는 '18. 11월부터 '21. 7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5항에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50%와 직무수행능력 50% 비율로 하되, 직무수행태도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
- 한편 위 시(총무과)는 '19. 하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을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40%, 직무수행태도 10% 비율로 하되, 시민봉사과에서 통보한 민원 지연처리자는 직무수행태도에서 지연처리 1건당 0.5점의 감점을 적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모든 부서에 통보함
 - 그런데 위 시(총무과)는 '19. 9월부터 '21. 4월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시민봉사과에서 통보한 민원 지연처리 69건(34명) 중 해당 부서에서 50건(25명)만 감점처리하고 19건(11명)은 미감점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함
 - 또한 시민봉사과는 '19. 8월에 1일 이상 민원을 지연하면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한다고 시장 결재 후 모든 부서에 공지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민원처리 지연자 전원이 아닌 민원처리 독촉 후 불이행한 자만을 임의적으로 감점 대상자로 통보
- 그로 인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제도가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부당하게 적용되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감점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 초래

☞ 시민봉사과는 민원 지연처리자 선정 절차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재수립하고, 근무성적평정 시 민원 지연처리자 명단을 총무과에 통보하며, 총무과는 근무성적평정 시 시민봉사과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 감점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③ 임도·숲길 조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산림공원과)는 '18. 11월부터 '21. 9월까지 임도 및 숲길 조성을 위하여 33억 3,723만원의 보조금으로 임도·숲길 조성사업 추진
- 「산림자원법」 제9조 등에 임도시설 설계 시 노면 및 경사면에 있는 입목(뿌리 등 포함)은 전량 제거하고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산림공원과)는 '19. 4월부터 '21. 9월까지 '19년 간선임도 개설사업(○○지구) 등 9건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입목부산물을 사업장 외부로 미반출한 채 임도 사면에 존치시켜 위험 노출
 - 그 결과 입목부산물이 임도 사면 등에 임의 폐기되어 집중호우·태풍·산불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 초래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등에 시공자는 5억원 미만인 산림토목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으면 현장대리인 1인을 최대 3개소까지 배치 가능하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산림공원과)는 '18. 11월부터 '20. 5월까지 '19년 ○○ ○○지구 임도구조개량사업 등 6건의 임도시설사업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이 중복배치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그 결과 현장대리인의 사업장 간 잦은 이동·이탈 등으로 인하여 안전 사고 발생 및 사업 품질이 저하될 우려 초래
- 「산림휴양법」 제23조 등에 숲길관리청은 숲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의견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변경 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산림공원과)는 '20. 4월부터 '21. 6월까지 '20년 ○○○ 정비사업 등 2건(8.35km, 2억 8,700만원)의 숲길 조성·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의 신규 및 변경이 있었는데도 노선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 없이 사업 추진
 - 그로 인하여 숲길의 지정·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숲길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려고 한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 초래

☞ 임도·숲길 조성사업 추진절차 미준수 및 입목부산물 현장 방치 등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4 정보공개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총무과 등)는 '18. 11월부터 '21. 9월까지 6,29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받아 처리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정보공개 청구 대상정보가 부존재할 경우 「민원 처리법」을 준용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총무과 등)는 '18. 11월부터 '21. 9월까지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230건을 정보부존재로 통지하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도 적게는 1일부터 많게는 15일까지 기간을 넘겨 지연처리
 - 그로 인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고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결과 초래
- 「정보공개법」 제18조 등에 청구인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이의 신청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되 이의신청 요구대로 공개결정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미개최 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총무과)는 '19. 1월부터 '21. 9월까지 25건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3건을 부분·비공개 통지하면서 7건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후 처리하였고, 6건은 심의회 개최 없이 부당하게 처리
 - 또한 인용결정한 12건 중 1건도 회신내용은 비공개이므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했는데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
 -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받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

☞ 회신내용과 결정문을 다르게 답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앞으로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비공개 결정 건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주의요구”

5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환수 업무 등 처리 태만

- 위 시(일자리경제과)는 '20. 00월과 00월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주)○○○○ 등 4개 기업에 대하여 전남도로부터 보조금 환수통보를 받음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에 지방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받았으면 3년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일자리경제과)는 '20. 00월부터 '21. 00월까지 전남도 투자유치과로부터 (주)○○○○○○○○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 미충족에 따른 전액 환수(약 13억원) 통보를 3차*에 걸쳐서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
 - * 환수절차 이행요구 : 1차 '20. 00. 00. / 2차 '20. 00. 00. / 3차 '21. 00. 00.
 - 더욱이 전남도 투자유치과에서 위 기업에 대하여 전액 환수하도록 공문 외에도 전화 등으로 수차례 독촉하였는데도 '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태만
-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8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일자리경제과)는 '20. 00. 00. 전남도 특정감사 결과 (주)○○○○과 ○○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수도권 기존사업장 미폐쇄 등 위반으로 보조금 약 10억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는데도
 -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태만히 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 기회가 박탈되고, 보조금 약 23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 ☞ 보조금 환수 등 시정요구를 받고도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당시 담당팀장 및 담당자 등 2명에게 “징계요구”, 현재 담당팀장과 담당자 2명에게 “훈계요구”
-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위반한 3개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6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세무과)는 '18년부터 '21년 기간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취득자가 취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하면 지자체장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세무과)는 '18년부터 '21년 기간에 신고·납부 누락 및 감면 조건 위반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 116건 1억 566만원을 부과 누락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부담 초래

(단위: 건, 천원)

세목	부과대상	건수	부과(추징) 대상세액
계		116	105,660
취득세	임시건축물 부과누락	4	6,774
	지목변경 부과누락	20	6,256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분 추징	31	90,813
등록면허세	지하수 굴착신고 부과 누락	61	1,817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 부과누락 되거나, 감면요건을 위반하여 추징대상이 된 취득세 1억 566만원을 부과(추징)하도록 “시정요구”

7 ○○○○○○○○ 관광자원화 사업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회계과,산림공원과)는 '20. 00. 00. (주)○○○○○○○○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 관광자원화 사업'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 계약을 2억 4,000만원에 체결

1. 계약기간 연장 업무 처리 부적정

-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 책임으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가능하고, 기한 내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산림보전과)는 용역만료기한('21. 2. 2.) 3일 전에서야 용역 정지요청을 하면서,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변경 계약을 계약부서(회계과)에 요청
 - 또한 계약부서(회계과)는 용역정지 및 변경계약 사유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부서(산림공원과)의 변경계약 요청만으로 용역 만료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141일)하여 변경계약 체결('21. 6. 18.)
- 그 결과 기한 내 미완성된 과업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 (4,399만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

2. 용역감독 업무 소홀

-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시 공정예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등 용역 착수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과업 수행지침 상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산림공원과)는 위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조형물 및 실물모형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산업디자인 사업자’ 등으로 제한하여 ‘20. 00. 00.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 ‘21. 00. 00. 조형물이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에 의해서 제작된 후 납품되어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와 다른데도 준공검사를 함
 - 또한 계약상대자가 조형물 저작권 문제 해결 등을 사유로 용역 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 협의 없이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수행인력이 해당 과업을 수행하도록 방치
- 그로 인하여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른 과업수행의 적정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등 계약업무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앞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계약기간 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8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방계약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형식의 부적절한 계약체결

- 위 시(산림공원과)는 '20. 00. 00.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 ○○○○전시관 건축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8억 9,991만원)' 계약상대자를 결정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등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은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공모 등의 방법 중에 하나를 적용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설계공모는 공모안을 접수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산림공원과)는 '20. 00. 00. '건축설계'와 '내부 전시시설 제작설치'의 사업내용과 입찰참가자격이 상이한데도 각각 설계공모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혼합하여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 그 결과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고, 공정하게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지방계약법령의 취지 훼손

2. 공사, 용역이 혼재된 사업의 계약 추진 부적정

- 위 시(도시재생과)는 '21. 00. 00.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 ○○○○길 조성사업(1억 3,300만원)' 계약상대자를 결정
-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과 물품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계약 집행기준」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 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재생과)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목적물에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약 70.1%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 그 결과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취지를 훼손시키고, 타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상실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계약목적물의 공종이나 입찰참가자격 등 검토를 철저히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9 도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 위 시(일자리경제과)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4조 및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제34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
 -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3년 이내 미착공 등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
 - * 3년 이내 미착공, 준공 후 2년 내 미가동, 가동 후 5년 내 축소, 휴·폐업, 이전 등
 - 그런데 위 시(일자리경제과)는 '09년부터 '18년까지 지원한 3개 업체가 3년내 미착공 등으로 환수 사유가 발생하여 8억 3,500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도 '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 결과 도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 기회를 박탈하고, 도·시비 보조금 8억 3,500만원 낭비 초래

☞ 투자유치 보조금 환수대상 3개 기업에 지원한 8억 3,50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방안 마련하도록 **“통보”**

10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부서)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사업안내」,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등에 수급권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 지급하여야 하고, 중지 사유 발생 월 다음 달부터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부서)는 '18. 11월부터 '21. 9월까지 사회보장급여를 43명 2,293만원 과소, 40명 1,656만원 과다 지급

(단위: 명, 천원)

구분	사유	과소		과다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3	22,938	40	16,562
아동(가족양육)수당	90일이상 국외 체류			19	7,500
기초연금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13	4,774		
생계급여	실제소득 미반영			9	7,600
	신규 신청한 달부터 산정 오류	1	248	1	354
주거급여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4	672		
	장기입원자 지급월 산정 오류	4	644	11	1,108
장제급여	미신청으로 인한 미지급	21	16,600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등에 긴급의료비 지원 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가 150만원 이상('20. 7. 31. 20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주민생활지원과)는 '18. 11월부터 '21. 9월까지 150만원 이상('20. 7. 31. 200만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가 청구된 34건 7,437만원에 대하여 부당청구 여부를 미확인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의료급여사업안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한 후 3개월,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인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사회복지과)는 '18. 11월부터 '21. 9월까지 37명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으로 지급하고 3개월,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지급한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지 미점검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과소 지급한 43명에 대하여 2,29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40명에 대하여 1,656만원을 회수하며, 앞으로 긴급의료비 부당청구 확인과 장애인 보조기기 점검을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11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 위 시(문화예술과)는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게임산업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로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 하도록 규정
- 또한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등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시·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문화예술과)는 '19. 00. 00. 적발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 등 2명에 대하여 나누시는 감경기준을 규정한 규칙이 없는데도 영업정지 기간 등을 1/2로 감경 처분
 - 또한 '19. 00. 00. ○○PC 적발 건을 광주지검에서 종업원 '○○○'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하였는데도 주인 '○○○'에 대하여 나누경찰서에서 영업주를 무혐의처리 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하게 1차 행정처분을 취소
- 그로 인하여 '19. 00. 00. ○○PC 2차 적발 건에 대하여 2차 처분인 영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고, 1차 행정처분인 과징금 50만원으로 처분하는 결과를 초래

- ☞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 행정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감경 규칙을 제정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법령상 개선요구**”

12 농업법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

- 위 시(남평읍 등 7개 읍면)는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청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취증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남평읍 등 7개 읍면)는 '19년부터 '21년 9월까지 농취증을 발급 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9필지, 46,025㎡를 '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법인등기 변경 미조치
- 「농지법」 제7조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으로 규정
 - 그런데 위 시(남평읍 등 11개 읍면동)는 '19년부터 '21년 9월까지 농취증 발급 시 세대원 합산 면적을 확인하지 않아 경기도 등에 거주하는 19세대에 농지 소유면적 1천㎡를 초과하는데도 38필지 26,028㎡ 발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농업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포함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경 조치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천㎡ 초과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경작 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도록 “시정요구”

13 농업·기술지도분야 민간보조사업 등 추진 부적정

- 위 시(농업정책과 등 4과)는 '19년부터 '21년까지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장비 구축

1. 농업 시설물 공사·기계장비 구입 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보조사업자가 건설공사 2억원·전문공사 1억원·일반공사 8천만원·물품 2천만원 이상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계약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에 의해 예정가격이 결정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배원예유통과 등 2과)는 '21. 4월 ○○농협의 ○○○ 보관·저장 창고 신축 공사(40억 4,728만원)를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면서 예정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최저가 입찰로 약 27억원(67%)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 4개 보조사업자가 69억 7,893만원의 4개 보조사업을 43억 300만원 (62%)에 낙찰자를 결정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우려 초래

2. 농업용 농기계 구입 가격 검토 부적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농업정책과)는 '18년부터 '20년까지 ○○○○법인 등 4개 법인이 콩 수확기 등 4대 농기계 구입 시 조달청 고시단가보다 높게 구입하도록 방치하여 납품업체에 2,353만원 이익을 주는 결과 초래

3. 보조금으로 지원된 중요재산 등 사후관리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농업용 시설물·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농업정책과 등 3과)은 '19년부터 '21년까지 보조사업장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 시 보유현황만 확인하고 사용 실적에 대한 내부결과보고 없이 관리대장에 “이상없음”으로 관리
- 이에 '21. 10. 25. 현장 감사를 통해 이양기 등 중요 장비를 점검한 결과 '19년 ○○농협에 지원한 이양기가 최근까지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 결과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장비 등이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방치 되는 결과 초래

4. 농업 시설물 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보조사업자는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농업정책과 등 3과)는 '19년부터 '20년까지 (주)○○건설 등 6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관리비 증빙자료로 허위(허위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2,443만원을 부당 집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

- ☞ 보조사업자(○○농협)가 예정가격을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 6개 시공업체의 산업안전관리비 청구서에 대하여 정산 소홀로 부당하게 지급된 2,443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농업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할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과 농업용 농기계 구입 지원 시 가격 검토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 ☞ 매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시 현장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및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문서화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등 부적정

- 위 시(도시과)는 2,493개소, 59,368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관리
 - 「국토계획법」 제85조 등에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과)는 단계별 집행계획 도로 46개소 중 소로0-00호선 등 24개소(3,572억원)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미반영된 “○○ ○○○ 마을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17개소(519억원)을 시행
 - 그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행정계획의 신뢰에 불신을 초래
- 위 시(도시과)는 ‘18. 11월부터 ‘21. 9월까지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교통시설 (광로, 대로, 중로, 소로) 1,666개소 중 26개소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고, 시장·군수는 실시계획 인가내용을 고시하며, 시행자는 공사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완료 공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과)는 ○○ ○○○ 마을 도시계획도로(소3-1호선) 정비 공사 등 7건은 실시계획 미인가 및 인가내용 미고시, ○○○아파트~ 국도00호선 간(중0-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은 공사는 완료 하였으나 나주시보에 공사완료 미공고함
 -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 사후관리에 문제발생 우려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에 시장·군수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과)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은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중로0-0호선 등 18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및 1·2단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 미추진
- 그 결과 우선 투자되어야 할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재원확보 한계로 집행 지연 우려 발생

-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단계별 집행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은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 도시계획도로 공사 완료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15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도시과)는 '18. 11월부터 '21. 10월까지 4,35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1. 개발행위 허가 처리 부적정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과)는 '18. 11월부터 '21. 10월까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43건, 1억 1,467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 개발행위 미 준공으로 준공검사 시 전액 매입 가능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과)는 '18. 11월부터 '21. 10월까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21건, 2억 8,842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 받지 않고 허가
 - 그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2.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업무 부적정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과)는 '18. 11월부터 '21년 10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짧게는 130일, 길게는 549일이 경과된 38건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예치한 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예치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과)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18. 11월부터 '21. 10월까지 예치한 20건의 이행보증증권 2억 3,073만원의 보증기한이 짧게는 30일, 길게는 453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재예치 등 행정조치 미이행
- 그로 인하여 난개발 방지 및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3.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부적정

- 「국토계획법」 제56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시(도시과)는 ○○○○공사 ○○지사장으로부터 고압 송전탑 주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협조 요청 공문 2회 및 국민신문고 민원 1회 건을 처리하면서
- 토지 소유자는 '20. 00. 00. 광주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실제 불법 행위자를 찾아 불법 개발행위를 원상회복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했는데도 '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
- 그로 인하여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미매입한 공채 매입, 미예치한 이행보증금 예치, 허가기간 경과건 의견 청취 후 기간 연장 또는 취소, 보증기간 경과건에 대하여 보증기한 연장,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하도록 “시정요구”

16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협의 부적정

- 위 시(교통행정과 등 2개 과)는 '18년 11월부터 '21년 9월까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51건을 추진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등에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통상 500m 이내)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시행 전에 문화재보전 영향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교통행정과 등 4개 과)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10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보전 영향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
 -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게 되는 등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 문화재보전영향 검토 및 협의하지 않고 사업 추진한 담당자 5명에게 “훈계요구”

17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추진 부적정

- 위 시(역사관광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등)는 '18년 11월부터 '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19개 공사에 32건의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시 특허권자와 사용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특허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 할 경우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역사관광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등)는 32건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면서 9건에 대하여 입찰공고 명시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 또한 특허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공사에 참여하였는데도 내역에 반영된 기술사용료 2,677만원에 대하여 감액 미조치
- 그 결과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 등으로 과다 계상된 2,677만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아 예산 낭비 초래

☞ 특허공법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철저 및 과다 반영된 사업비 2,677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18 일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시(상하수도과)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및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업무와 '17년 6월부터 '21년 8월까지 광역 및 농어촌 상수도 정비사업 2건을 추진

1.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미수립

- 「수도법」 제6조에 시장·군수는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의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하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상하수도과)는 '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미수립하여 시·도지사 승인도 받지 않고 있음
 - 그로 인하여 물 수요관리 목표 등을 정하지 못해 효율적인 물 관리를 하지 못했고 수도 관리 저해

2. 일반수도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 「수도법」 제17조 등에 시장·군수는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상 증·감 시 환경부 협의 후 시·도지사 변경인가를 받고,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용을 영산강청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상하수도과)는 '21. 8월에 준공한 “○○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등 2건의 일반수도 사업 추진 시 환경부 협의 절차 및 시·도지사 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보조사업 변경내용 환경부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
- 「지방계약법」 제9조 등에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 공사가 아니면 변경 계약으로 추진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상하수도과)는 '21. 00월에 준공한 “○○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등 2건의 일반수도 사업 추진 시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2개 마을(11.4km, 14억 5,872만원)을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지 않고 변경 계약하여 추진

- 「지방재정법」 제3조 등에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라남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상하수도과)는 '20. 00월에 준공한 “○○○○지구 농어촌 상수도 확충공사” 추진 시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음
- 그 결과 보조금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별도 발주하지 않아 동종업계에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기회를 상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공익 증대 사업, 별도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1년여 기간이 단축된 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점, 사업계획 변경 당시 나주시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한 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등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이 충족되어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① 일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시(상하수도과)는 '17년 6월부터 '21년 8월까지 광역 및 농어촌 상수도 정비사업 2건을 추진
 - 「수도법」 제17조 등에 시장·군수는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상 증·감 시 환경부 협의 후 시·도지사 변경인가를 받고,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용을 영산강청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상하수도과)는 '21. 00월에 준공한 “○○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등 2건의 일반수도 사업 추진 시 환경부 협의 절차 및 시·도지사 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보조사업 변경내용 환경부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
 - 「지방계약법」 제9조 등에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 공사가 아니면 변경 계약으로 추진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상하수도과)는 '21. 00월에 준공한 “○○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등 2건의 일반수도 사업 추진 시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2개 마을(11.4km, 14억 5,872만원)을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지 않고 변경 계약하여 추진
 - 「지방재정법」 제3조 등에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라남도예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상하수도과)는 '20. 00월에 준공한 “○○○○지구 농어촌 상수도 확충공사” 추진 시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음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변경계약을 통해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공익 증진 인정
- (적극행정) 신속한 상수원 보급을 위해 별도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1년여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적극행정 인정
- (고의·중과실) 해당 사업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추가된 사업지역이 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지역이며, 사업계획 변경 당시 나주시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했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사례

1 「국립나주숲체원」 유치 및 성공적 개원 적극 지원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국립나주숲체원”의 나주시 유치활동 전개 및 사전 인프라 구축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복합산림복지시설 유치·성공 개원으로 새로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제고

□ 추진배경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금성산 이외에는 조성 가능한 대규모 산림(50ha 이상)이 없어 부지확보 애로 등으로 계획단계에서 번번이 무산
 - 금성산 면적 중 대부분은 도 소유의 도유림과 군부대, 사찰부지, 사유지로 구성

< 전남 휴양림 현황 >

- ▶ 16개소 : 여수, 순천 2(국립 1), 광양, 화순 2, 고흥, 보성, 구례, 장성(국립), 장흥 2(국립 1), 해남, 강진, 완도, 신안 * 시 단위 중 나주와 목포만 미조성

- 금성산 도유림을 활용하여 국비로 조성·운영되는 “국립나주숲체원”을 유치하여 나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산림복지시설 확보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기 간 : '18. 1. ~ '20. 5. * '20. 11. 12. 개원
- 규모/위치 : 58.2ha / 나주시 경현동 산1-6번지 등 16필지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 시설내용 : 산림체험센터, 산림휴양관, 방문자센터, 숲다원, 숲속의집 등
- 운영주체 : 한국산림복지진흥원(26명 운영)
- 운영예산 : 5억원(국비 100%)

* 전국 국립숲체원(7개소) : 대전, 춘천, 횡성, 칠곡, 청도, 나주, 장성

□ 추진실적 및 어려움 해결

- 국립나주숲체원 나주 유치 확정 취소 : '13. 6.
 - 취소사유 : 국가 행정재산 지자체 기부채납 불가 → “공유재산” 확보 조건
- 민선 6기 시장 취임 후 “국립나주숲체원” 재건의 : '15. 1 ~ 5.
 - 산림청·산림청 관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재건의(시장 2회, 현지설명 6회)
 -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2회, 나주시장실), 국회 농수위 건의(3회)
- 공유재산 확보 등 사업기준 충족을 위한 유치활동 전개 : '15. 6 ~ '17. 3.
 - 도-나주시 간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공유재산 확보 등(58.2ha)
 - 공유재산 확보방안 마련 :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교환 결정(도지사 결심 : '16. 8. 7.)
 - 도 공유재산심의회 : 국유림(진도 임회 58ha) ↔ 도유림(나주 경현동 56ha) 교환 결정
 - 편입 예정 사찰부지(2필지, 6,456㎡) 매입을 위한 종단관계자 등 설득
 - 조계종 총무원, 백양사, 불갑사, 원각사 등 13회 방문·설득('15. 9. ~ '16. 10.)
 - 사유지(11필지, 17,233㎡) 지속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 사유지 2필지 8,406㎡를 기부채납 받아 조성비용 절약
- “국립나주숲체원” 조성계획 최종 확정·나주시 통보 : '16. 11.
- 도시공원지역 편입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 해결 등 행정지원
 -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관련 인허가 협의 : '17. 1. ~ 12.
 -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 용역(시비 20백만원), 도시관리(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회 개최 및 고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및 건축인허가 업무협의(10개 관련부서)
 - 사전 기반시설 조성 지원(4개 공종, 54억원 투입) : '16. ~ '22.
 - 상수도 등 기반시설(6.4억원 투입 / 2016년) : 상수도 1.2km, 하수도 0.7km
 - 등산로 및 산책로 조성(1.7억원 투입 / 2021년) : 명상숲길 0.7km
 - 숲가꾸기사업 지원(1.5억원 / 2016. ~ 2018년) : 숲가꾸기, 풀베기 등 46.2ha
 - 진입도로 등 확포장(45억원 / 2020. ~ 2022년) : 도로개설 1.24km

□ 기대효과

- 전남 최대 산림복지시설 유치로 연 3만명 이상 수혜 기대
 - 이용현황 : '20. 11. ~ '21. 8. 기준 1만 6천명 이용(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 저조)
 - 2020년 시설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4.78점(만점 5점)으로 만족도 최고 수준
- 국립나주숲체험·생태숲·생태물놀이장을 연계한 새로운 치유·힐링공간 마련
 - 생태숲 (연 2만명 방문), 생태물놀이장 (연 1.5만명 방문)

참 고 자 료

“국립나주숲체원” 유치·조성 관련 자료



- 국립나주숲체원 조성완료 사진 -



나주시장 산림청 방문건의('15. 5. 4.)



산림청 녹색사업단 나주시 협의('15. 6. 3.)



국·도유림 교환 실무단 협의('15. 8. 31.)



도의회 상임위 공유재산 관련
현지확인('16. 3. 14)



조계종 스님 현지확인('16. 4. 11.)



조계종 총무원 협의('16. 4. 26.)



사유지 기부채납 추진('17. 2. 21.)



국립나주숲체원 개원식('20. 11. 12.)

news 1

지역 > 광주 > 전남

나주시, 사회적 약자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 확정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나눔숲체원유치 확정 홍보기사

2021. 11. 26. 사유지 문제 풀린 나주 나눔숲체원사업 탄력

사유지 문제 풀린 나주 나눔숲체원사업 탄력

조계종 매각 승인으로 본격화... 금성산 산림욕장에 휴양시설 조성

By 가제 2018 08 28 15:03:00

사유지 매입 문제로 발목을 잡혔던 200억원대 규모의 전남 나주 금성산 일대 '나눔숲체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소유권과 사용권 지분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눔숲체원 조성사업이, 최근 사유지 일부인 사립재산의 조계종 대각 승인이 이뤄지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

나주시는 토지가 확보됨에 따라 숲·시냇가·이끼밭·다랑·등기·생태를 신축하게 바꾸려 했고, 기존에 계획된 숲·이끼·생태를 신축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는 200억 국비를 투입해 금성산 산림욕장에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휴양시설 '나눔숲체원'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찰림 매각 관련 홍보기사

2

도내 최초 공익활동 지원센터 구축 운영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통합 운영

□ 추진배경

- 개별 센터 운영 시 시민들의 민원업무 혼선과 서비스 접근성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연계가능 사업의 통합운영 필요
-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등 연계 지원업무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및 행정 비용 절감

□ 추진내용

-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 '17. 10. 20. * 전남도내 최초
- 전남 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규설치 공모선정 : '20. 3.
-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운영 : '20. 6. 15.

〈 통합형 직영센터 추진 과정 〉

- 2018. 7. 나주시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 2018. 12.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방안 검토
- 2019. 7. 통합형 직영센터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별 협의 진행
- 2019. 10. 통합운영 결정(12월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 개최)

□ 추진실적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공모사업 : 지역공동체 88개소 선정 지원
* 주민모임형성 및 공동체 활동지원, 민간거점 공간지정 및 커뮤니티활성화 프로그램지원 등
-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 씨앗 22개소, 새싹 7개소, 열매 2개소
- 공익활동가 양성 및 지원 : 38개소 선정지원/64명(1~4기)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신규 30개소

□ 기대효과

- 주민참여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주체 간 유기적 연계 및 통합 지원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
 - 통합운영에 따른 건물 임대료 등 연 50백만원 예산 절감
- 발굴된 공동체 및 인적자원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연계 → 연 3개소 목표

참고자료

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경제 지원활동 사진

나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식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공익활동가 합동워크숍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현장 컨설팅)



공익활동가 월례회의



5. 처분요구서

목 차

① 지방보조사업 관리·감독 등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37
② 근무성적평정 감점제도 부당 운영(개선)	42
③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45
④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절차 미이행(주의)	48
⑤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50
⑥ 임도·숲길 조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55
⑦ 유기동물 위탁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통보(시정완료)]	60
⑧ 정보공개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63
⑨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67
⑩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환수 업무 등 처리 태만(징계, 훈계, 통보)	70
⑪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81
⑫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85
⑬ 도로점용료 및 지역개발공채 관리 부적정(시정)	90
⑭ ○○○○ ○○○ 처리대행 용역 계약 부적정(주의)	93
⑮ ○○○○○○○○ 관광자원화사업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96
⑯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01
⑰ 도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부적정(통보)	106

⑱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09
⑲ 보육시설 지도·감독 부적정(시정, 주의)	120
⑳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31
㉑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처분 부적정(훈계, 개선)	137
㉒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시정)	141
㉓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등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통보)	145
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업무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159
㉕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혐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훈계, 주의)	166
㉖ ○○○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171
㉗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177
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협의 부적정(훈계) ..	183
㉙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186
㉚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90
㉛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193
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관리 부적정(시정)	198
㉝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추진 부적정(시정)	202
㉞ 일반수도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206
㉟ 하수도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212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사업 관리·감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기획예산실)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표 1] “나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현황”과 같이 나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1] 나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현황 (2018.11월~2021.9월)

(단위 : 회, 개, 천원)

구 분		연도별 심의 현황				
		계	2018. 11~12월	2019년	2020년	2021. 1~9월
개 최 횟 수		27	4	8	11	4
심의 내용	사업수	1,649	497	594	518	40
	보조금	197,319,975	59,637,056	64,082,950	71,032,769	2,567,2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른 보조사업 부적정 추진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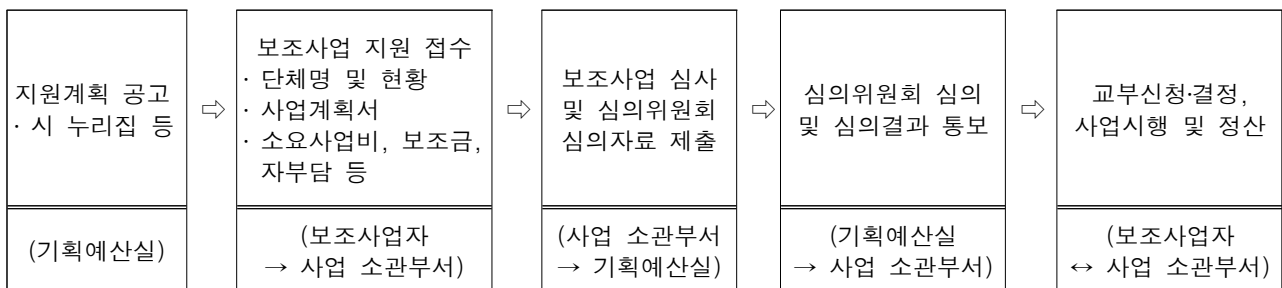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나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나주시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3조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 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나주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고, 나주시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나주시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는 [그림] “나주시 지방보조사업 공고·심의 및 시행절차”와 같이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사업 소관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지원계획을 접수받도록 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소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나주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나주시 지방보조사업 공고·심의 및 시행절차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나주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나주시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재원분담액을 확정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이를 확보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는 2020년 나주○○○○○ 운영비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0,000천원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175,000천원(87.5%)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나주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채 보조금 25,000천원(12.5%)만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표 2] “2020년 나주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른 보조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5개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나주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¹⁾와 다르게 자부담금 458,090천원 전액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2020년 나주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른 보조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 부서	나주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실제 투입한 보조사업비	보조사업자 자부담금 미확보액
	보조사업명(신청단체)	총사업비				
		계	보조금 (분담율)	자부담 (분담율)		
2개과	5개 사업	648,090	190,000	458,090	190,000	458,090
체 육 진 흥 과	나주○○○○○ 운영비 (나주○○○○○)	200,000 (100%)	25,000 (12.5%)	175,000 (87.5%)	25,000 (12.5%)	175,000 (87.5%)
	나주○○○○○센터 운영비 (○○○○○산학협력단)	195,090 (100%)	30,000 (15.4%)	165,090 (84.6%)	30,000 (15.4%)	165,090 (84.6%)
	나주시장배 읍면동 대항 ○○○○ (나주시○○○○)	22,000 (100%)	20,000 (91%)	2,000 (9%)	20,000 (91%)	2,000 (9%)
문 화 예 술 과	○○○지 발간 (○○○지편찬추진위원회)	150,000 (100%)	50,000 (33.3%)	100,000 (66.7%)	50,000 (33.3%)	100,000 (66.7%)
	나주○○○ 경상 운영비 (나주○○○)	81,000 (100%)	65,000 (80.2%)	16,000 (19.8%)	65,000 (80.2%)	16,000 (19.8%)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나주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무력화되어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2. 나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²⁾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1) 나주시 기획예산실-00000(2019. 00. 00.), 2019년도 제0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주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 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6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이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나주시 의회 의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며,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는 2018. 6월부터 2021. 5월까지 시민대표 ○○○ 위원 등 [표 3] “나주시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같이 민간 위원 10명과 공무원 위원 4명 등 총 14명으로 나주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표 3] 나주시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2018.6월~2021.5월)

구 분	직 위	성 명	임 기
		14명	
민간 위원(위촉직 위원) 10명	시민	○○○	2018.06.01.~2021.05.31. (3년)
	나주○○○	○○○	
	○○○○○ 교수	○○○	
	시민	○○○	
	지역○○○ 간사	○○○	
	시민	○○○	
	○○○○○연구원 ○○연구원	○○○	
	○○○○○○○○○ 과장	○○○	
	○○○○○○집 원장	○○○	
	광주전남○○○○○○○	○○○	
공무원(당연직 위원) 4명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10.05. 조례 제1439호

따라서 나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운영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기획예산실)는 2019. 4월에 민간 위원인 ‘○○○’가 사직³⁾하여 민간 위원 9명과 공무원 위원 4명 등 총 13명으로 변경되어 공무원 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였는데도 민간 위원을 보궐 위촉하거나 공무원 위원의 수를 감축하지 않은 채 2019. 5월부터 2021. 5월까지 [별표] “나주시 심의위원회 부적정 운영 명세”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무원 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 초과한 가운데 나주시 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그로 인하여 민간 위원의 참여로 지방보조금 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앞으로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나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나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여 지방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3) 나주시 기획예산실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공문으로 접수됨을 확인하지 못함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감점제도 부당 운영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총무과, 시민봉사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 11월부터 2021. 7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계획서 및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50%의 비율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의 범위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는 2019. 하반기부터 2021. 상반기까지 5급 이하 공무원 평정업무 추진 계획을 모든 부서에 통보하면서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40%, 직무수행태도 10% 비율로 하되, 시민봉사과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한 민원 지연처리 건은 민원담당자에게 직무수행태도에서 민원 지연처리 1건

당 0.5점의 감점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나주시는 모든 부서에서 평정점의 배점 비율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하고, 민원 지연처리로 통보된 건은 민원담당자에게 직무수행태도에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통보된 민원 지연처리 1건당 0.5점의 감점을 적용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총무과)는 2019. 하반기부터 2021.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별표] “민원 지연처리자에 대한 감점 반영 명세”와 같이 시민봉사과가 민원 지연처리 건으로 통보한 69건 중 해당 부서에서 50건만 감점처리하고 19건은 감점처리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시민봉사과는 2019. 8. 26. 1일 이상 민원처리를 지연하면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한다고 시장 결재 후 모든 부서에 공지하였 으면서도 실제로는 민원처리 지연자 전원이 아닌 독촉 후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만 임의적으로 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 대상자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다.

그로 인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제도가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부당하게 적용되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감점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근무성적평정 시 민원 지연처리자에 대하여 직무수행태도에서 감점을 적용할 경우에는 민원 지연처리자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여 지침을 수립하고, 근무성적평정 시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 지연처리자 명단을 인사부서로 통보하면 인사부서가 통보받은 명단을 해당 부서에 통보한 후 감점처리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총무과)

내 용

1.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5급 승진임용

나주시는 2018. 00. 00. 지방○○6급 ‘○○○’과 지방○○6급 ‘○○○’를 지방 행정5급 승진(교육)대상자로 의결한 후, ‘○○○’는 2018. 00. 00. ‘○○○’은 2019. 00. 00. 지방행정5급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에 따르면 지방세무직렬이 5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직렬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영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지방세무직렬과 지방행정직렬을 지방행정5급으로 승진시킬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5급 기본교육과정훈련성적(30%)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통합하여 1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순위대로 임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총무과)는 2018. 00. 00.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지방행정5급 승진대상자 10명에 대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면서 지방세무직렬과 지방행정직렬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지방세무직렬과 지방행정직렬별로 부당하게 따로 작성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당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가 8위인 지방○○6급 ‘○○○’가 7위인 지방○○6급 ‘○○○’보다 2018. 00. 00. 5급으로 부당하게 먼저 임용되고, 7위인 지방○○6급 ‘○○○’은 15일 늦은 2019. 00. 00. 임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상 앞순위자가 5급으로 늦게 임용되어 손해 본 기간이 15일이지만 그 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 승진이 늦춰질 수 있는 우려를 발생시켰다.

2. 6급 승진 가능인원 과소 산정

나주시는 2019. 7월부터 2020. 7월까지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 7급 56명을 6급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소속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6급 정원과 현원을 비교한 후 정확한 결원을 파악하여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보고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승진 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총무과)는 2019. 7월부터 2020. 6월까지 6급으로의 승진 인사를 추진하면서 6급 가능인원을 잘못 산정하여 2019. 하반기 인사에 0명, 2020. 상반기 인사에 0명, 2020. 하반기 인사에 0명을 실제 승진 가능인원보다 적게 시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 후 당초 승진 가능인원보다 적은 수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승진 임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6급으로의 승진 가능인원을 결정할 수있는 임용권자의 권한이 축소되었고, 추가 승진이 가능한 7급 직원들이 6급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앞으로 인사법령에 따라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5급 승진임용을 하고, 6급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가능인원 산정을 정확히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절차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 11월부터 2021. 6월까지 징계요구부서(감사실)로부터 6급 이하 24명의 경징계 요구에 대하여 나주시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심사 청구서에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제9장 복무 및 징계의 3. 징계편에 따르면 실제로 심사를 하기 전에 권한있는 징계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청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 후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징계요구부서의 경징계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를 처분할 때는 우선 그 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에 통보하여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는 2018. 11월부터 2021. 6월까지 징계요구부서(감사실)로부터 [별표] “징계의결 심사 절차 위반 명세”와 같이 총 24명에 대하여 경징계 요구를 받아 징계업무를 처리하면서 나주시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감사실)에 통보하면서 징계요구부서(감사실)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함께 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2020. 00. 00. ○○죄로 과료 ○만원 처분을 받은 지방○○8급 ‘○○○’에 대하여 2021. 00. 00. 인사위원회에서 사법부의 유죄 판단과 다르게 ○○죄가 불성립한다는 판단으로 ‘불문’으로 의결하였는데도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여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앞으로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처분할 때는 그 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에 통보하여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산림공원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9. 1월부터 2021. 9월까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사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1,351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방댐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서기 ○○○는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사방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나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시장·군수)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산림공원과)는 2019. 1월부터 2021. 9월까지 나주시 부시장 등 8명을 위원으로 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만 한 채 위원회의 구성·운영 목적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나주시의 산사태취약지역에 시급히 시공되어야 할 사방사업의 계획 등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되지 않은 채 16개소의 사방사업이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사방지 지정·해제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방사업법」 제2조, 제4조 및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제2장 사방시설의 관리 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계약 이전에 사방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¹⁾을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국

1) 부동산정보시스템(KRAS),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IPS) 등

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행위제한 내용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산림공원과)는 2019. 12월부터 2021. 9월까지 2020년 계류보전사업(나주 ○○ ○○) 등 6건의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1] “사방지 지정·고시 현황”과 같이 사방사업에 편입된 토지 13필지, 2,935㎡에 대하여 사방지로 지정·고시를 하면서 시공계약 이전에 사방지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는데도 짧게는 10일 길게는 9개월 동안 사방지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채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사방지 지정·고시 현황(2019.12월~2021.9월)

구분	사업지구	사업기간	사방지 지정현황		
			필지 수	지정면적(㎡)	지정일
계	6건		13필지	2,935	
2019	나주 ○○ ○○지구	2019.00.00.~00.00.	○○면 ○○리 000 등 3	299	2019.00.00.
2020	나주 ○○ ○○지구	2020.00.00.~00.00.	○○면 ○○리 산000 등 2	664	2020.00.00.
2020	나주 ○○ ○○	2020.00.00.~00.00.	○○읍 ○○리 산00 등 2	319	2020.00.00.
2020	나주 ○○ ○○	2020.00.00.~00.00.	○○면 ○○리 000 등 2	399	2020.00.00.
2021	나주 ○○ ○○	2021.00.00.~00.00.	○○면 ○○리 000 등 2	647	2021.00.00.
2021	나주 ○○ ○○	2021.00.00.~00.00.	○○면 ○○리 000 등 2	607	2021.00.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사방사업에 편입된 토지 내의 구조물의 훼손과 토지사용에 대한 분쟁 발생의 우려를 초래하였다.

4. 소하천 등 하천점용허가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방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야계사방사업²⁾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하천

2)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 계류보전사업 :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 계류복원사업 :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 사방댐 설치사업 :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소하천 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 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소하천 등 하천에 대하여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 시행지역에 관한 협의와 함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를 득한 후 사방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산림공원과)는 2019.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019년 계류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2] “2019년 계류보전사업(나주 ○○ ○○) 추진 현황”과 같이 사업추진 대상 6필지, 15,825㎡가 소하천구역인데도 하천관리청에 사방지 지정·고시 협의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 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표 2] 2019년 계류보전사업(나주 ○○ ○○) 추진 현황(2019.4~6월)

연도	사업추진 대상필지	지적면적(㎡)	사업기간	사방지 지정·고시	하천부서 협의 및 하천점용 여부
계	6개 필지	15,825			
2019	나주시 ○○면 ○○리 000	2,698	2019.00.00. ~ 2019.00.00.	2019.00.00.	협의 및 하천점용 미이행
2019	나주시 ○○면 ○○리 000	10,291			
2019	나주시 ○○면 ○○리 000	707			
2019	나주시 ○○면 ○○리 000	1,107			
2019	나주시 ○○면 ○○리 000	93			
2019	나주시 ○○면 ○○리 000	929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하천관리청과 협의 및 점용허가 절차를 통하여 소하천의 정비·이용·보전을 위한 적정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회 미개최 및 사방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서기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산림보호법」 및 「사방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임도·숲길 조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산림공원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임도 및 숲길 조성을 위하여 3,337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임도·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는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임도시설사업 및 유지관리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임도설치사업 임목부산물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맞게 임도(간선·지선·작업임도) 시설의 설계 시 절·성토면 및 노면의 구조물을 반영하여야 하고, 노면·절토대상지에 있는 임목(관목을 포함)과 그 뿌리, 표토 등을 전량 제거·반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임도시설의 설계 시 잘라낸 나무, 그 부산물(가지, 뿌리)을 별도의 장소에 집재하여 전량(파쇄 등) 반출될 수 있도록 설계에는 임목부산물 처리비를 계상하고, 시공 시 임목과 그 뿌리, 표토 등을 전량 제거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산림공원과)는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표 1]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과 [사진] “임도 사면 등에 입목부산물 적치 사진”과 같이 2021년 간선임도 개설사업(○○ ○○지구) 등 총 9건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에 입목의 뿌리와 가지 등의 처리를 위한 입목부산물 처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임도시설 시공 시 노면·절토대상지에서 발생한 입목부산물을 외부로 전량 반출하지 않고 성토면 사면 등에 적치하는 등 임도시설의 설계·시공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2018.11월~2021.9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km)	사 업 비				사업기간	입목폐기물 처리비	현장 외 반출여부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9건	9.18	2,016	1,295	176	545			
1	2018년 작업임도 개설 사업(○○ ○○지구)	0.55	158	110	5	43	2018.00.00.~ 2019.00.00.	미계상	존치
2	2019년 간선임도 개설 사업(○○ ○○지구)	2.44	447	313	13	121	2019.00.00.~ 2019.00.00.	〃	〃
3	2019년 작업임도 개설 사업(○○ ○○지구)	0.69	132	92	4	36	2019.00.00.~ 2019.00.00.	〃	〃
4	2019년 작업임도 개설 사업(○○ ○○지구)	0.56	190	133	6	51	2019.00.00.~ 2019.00.00.	〃	〃
5	2019년 간선임도 개설 사업(○○ ○○지구)	0.84	280	196	8	76	2019.00.00.~ 2020.00.00.	〃	〃
6	2020년 간선임도 개설 사업(○○○지구)	0.79	183	128	5	50	2020.00.00.~ 2020.00.00.	〃	〃
7	2020년 간선임도 개설 사업(○○ ○○지구)	0.81	162	113	6	43	2020.00.00.~ 2020.00.00.	〃	〃
8	2021년 간선임도 개설 사업(○○ ○○지구)	1.30	300	210	9	81	2021.00.00.~ 2021.00.00.	〃	〃
9	2021년 작업임도 개설 사업(○○ ○○지구)	1.20	164		120	44	2021.00.00.~ 2021.00.00.	〃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 임도 사면 등에 입목부산물 적치 사진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잘라낸 나무와 그 부산물(가지, 뿌리) 현장 내에 임의 존치되어 집중호우·태풍·산불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임도시설사업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승인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 및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제1호 아목 현장대리인 배치 편에 따르면 시공자는 임도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을 임도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5억원 미만인 산림토목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1인의 현장대리인(산림공학기술자)을 3개 이내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5억원 미만인 산림토목공사의 사업시행자가 현장대리인을 3개 이내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주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산림공원과)는 2018. 11월부터 2020. 5월까지 [표 2] “임도시설

사업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황”과 같이 2018년 임도보수사업(○○ ○○ ○○) 등 6건의 임도시설사업에서 발주자의 승인 없이 현장대리인을 중복배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임도시설사업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현황(2018.11월~2020.5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km)	사업장	사업자	현 장 대리인	중복배치 승인여부
계	6건	40.15				
1	2018년 임도보수사업(○○ ○○ ○○)	1.14	○○면 ○○리 산000 등	나주시 ○○ ○○	○○○	부
2	2018년 임도구조개량(○○ ○○지구)	3.60	○○면 ○○리 산000 등		○○○	부
3	2019년 임도구조개량(○○ ○○지구)	20.27	○○면 ○○리 00 등		○○○	부
4	2019년 작업임도 개설(○○ ○○지구)	0.69	○○면 ○○리 산000		○○○	부
5	2019년 임도보수사업	12.01	○○면 ○○리 산000 등		○○○	부
6	2019년 간선임도 개설(○○ ○○지구)	2.44	○○면 ○○리 산000		○○○	부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업장 이동과 잦은 사업장 이탈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임도시설사업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4. 숲길 조성에 따른 노선의 지정·고시 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숲길관리청은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숲길을 조성할 시 노선선정·조성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산림공원과)는 2020. 4월부터 2021. 6월까지 [표 3] “숲길(등산로 정비사업) 노선 지정·고시 현황”과 같이 2020년 등산로 정비사업 등 총 2건의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선의 신규 및 변경이 있었는데도 노선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숲길(등산로 정비사업) 노선 지정·고시 현황(2020.4월~2021.6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km)	사업비	사업자	사업기간	노선 지정·고시 여부
계	2건	8.35	287			
1	2020년 등산로 정비사업	6.25	132	나주시○○○○	2020.00.00.~00.00.	부
2	2021년 등산로 정비사업	2.10	155	나주시○○○○	2021.00.00.~00.00.	부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숲길의 지정·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숲길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려고 한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임도시설사업 추진 절차 미준수 및 입목부산물을 현장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통보(시정완료)

제 목 유기동물 위탁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축산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9. 4월부터 2021. 6월까지 유기동물의 포획·관리를 위하여 ‘○○○○(대표 ○○○)’ 등과 유기동물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217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하였다.

2. 유기동물 위탁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나주시유기동물위탁관리협약서」 제4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호 관리비¹⁾로 유기동물 1두 당 80,000원(생후 2개월 미만은 70,000원)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지급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의 발생 신고를 접

1) 보호 관리비에 사료비, 관리비, 간단한 치료(처치비)를 포함

수할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유기동물을 포획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 후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10일 이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유기동물이 보호시설에서 10일 이상 보호·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점검한 후 유기동물 위탁관리자에게 보호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축산과)는 2019. 4월부터 2021. 6월까지 [별표] “10일 이내 폐사한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지급 명세”와 같이 포획·구조된 유기동물이 10일 이상 보호·관리되지 못하고 짧게는 1일 길게는 9일 이전에 폐사하여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10일 미만 관리할 경우에 대한 감액 조항이 없다는 사유로 위탁관리자인 ‘○○○○○(대표 ○○○)’에 253두의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비 18,350천원을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10일 이상 보호·관리되지 않은 253두의 유기동물에 대하여 집행되지 않아도 될 보호 관리비 18,350천원이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유기동물 위탁업체를 변경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2021. 6월 유기동물을 10일 미만 관리할 경우에는 보호 관리비를 미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나주시유기동물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정보공개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총무과, 산림공원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주민들이 청구하는 정보공개 요구 6,292건을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접수받아 청구정보 소관부서로 배부하여 처리하였다.

지방○○주사보 ○○○는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정보부존재 처리기한 미준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가 부존재일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에 따르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청구된 정보의 소관

부서로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 부존재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정보공개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각 정보의 소관부서로 배부 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청구자에게 정보부존재로 통보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총무과)는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별표 1] “정보부존재 통보기한 지연 명세”와 같이 소관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 중 230건을 생산·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면서 처리기간을 최소 1일부터 최대 15일까지 지연하여 부당하게 처리하였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나주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①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 ②단순·반복청구, ③법령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④청구인이나 제3자가 이의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⑤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이외의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정보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가능 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

개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총무과)는 2019. 1월부터 2021. 9월까지 [별표 2] “나주시 정보공개 이의신청 명세”와 같이 이의신청 25건에 대하여 13건을 기각, 부분인용 및 각하 통보하면서 7건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였고 6건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당하게 부분인용 및 각하 처리하였다.

또한 산림공원과는 2020. 00. 00. ‘○○○○○(주)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본안) 건 재요청’ 이의신청 건을 처리하면서 회신내용이 비공개이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개최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며 결국 결정통보(인용)와 회신내용(비공개)을 청구인에게 각각 다르게 통보하였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받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①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와 회신내용을 다르게 답변한 지방○○주 사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정보 부존재일 경우 7일 이내에 처리하시고,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총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 11월부터 2019. 7월까지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 등 민간인 42명에게 해외연수 목적으로 ‘민간인 국외여비’(301-06)항목에서 57,682천원을 지원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8-2 민간인 국외여비(301-0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에 국외여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나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나주시 공무원 이외의 자가 나주시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에 출장을 가는 경우 위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나주시의 사업수행을 위해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

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민간인에게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외여행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고 민간인에게 선심성 국외여행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민간인 전문가가 나주시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민간인에 대하여 나주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장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민간인이 공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총무과)는 2018. 11월부터 2019. 7월까지 [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지원 현황”와 같이 ○○○○위원장, ○○○ 등 민간인에게 주요일정이 관광지 견학으로 구성된 선심성 국외여행을 해외연수 명목으로 실시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지원 현황(2018.11월~2019.7월)

(단위 : 천원, 명)

사업명	지원금액	여행국	여행기간	대상	여행 인원	여행 보고서
계	57,682		2건		42	
○○○○위원장 해외 연수	30,800	○○	2018.00.00.~00.00	○○○○위원장	22	제출
2019 ○○○연합회 ○○○지회 해외 연수	26,882	○○○	2019.00.00.~00.00.	○○○	20	미제출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총무과는 위 민간인들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므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거치지 않았고, 2019 ○○○연합회 ○○○지회 해외 연수의 경우 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전심사와 여행보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광일정이 포함된 선심성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에 57,682천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앞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국외여행 시에는 국외여행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지원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징계·훈계요구 및 통보

제 목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환수 업무 등 처리 태만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일자리경제과)

징 계 대 상 자 ① 나주시 ○○○○과 지방○○주사 ○○○

② 나주시 ○○○읍 지방○○주사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나주시 ○○○○○과 지방○○주사 ○○○

②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20. 00. 00.과 같은 해 00. 00. 각각 전라남도(투자유치과, 감사관실)로부터 (주)○○○○ 등 고용인원 미충족 등을 위반한 4개 기업에 대하여 [표 1]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환수통보 현황”과 같이 총 2,421,702천원의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표 1]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환수통보 현황

(단위 : 천원)

업 체 명	환수사유	환수금액
계		2,421,702
(주)○○○○○○○○	고용인원 미충족	1,343,000
○○	고용인원 미충족	400,000
(주)○○○○	수도권 기존사업장 미폐쇄	649,604
(주)○○○	고용인원 미충족	29,098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은 2018.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 투자유치 업무팀장으로, 지방○○주사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지방투자촉진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투자유치 업무팀장으로, 지방○○주사보 ○○○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지방투자촉진사업 업무담당자로 지방투자촉진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상시고용인원 미충족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처리태만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08-239호, 2009. 1.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이 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는 2020. 00월부터 2021. 00월 사이에 3회¹⁾에 걸쳐 전라남도(투

1) 1차 2020. 00. 00.(전남도 투자유치과-0000호) / 2차 2020. 00. 00.(전남도 투자유치과-00000호) / 3차 2021. 00. 00.(전남도 투자유치과-0000호)

자유치과)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주)○○○○○○○○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 미충족에 따른 보조금 환수계획 보고 등 환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전라남도(투자자유치과)에서 3회에 걸쳐 송부한 문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주)○○○○○○○○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 미충족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계획을 보고하고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나주시(일자리경제과)는 2020. 00. 00. 전라남도(투자자유치과)로부터 (주)○○○○○○○○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 미충족에 따른 지원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²⁾으로 같은 해 00 00.까지 환수계획을 보고하라는 공문(전라남도 투자자유치과-0000호)을 통보받고도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까지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전라남도(투자자유치과)가 2020. 00. 00.까지 환수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자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및 기업 측의 사후 불복절차 추진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나주시(일자리경제과)로 하여금 같은 해 00. 00. 환수계획을 2020. 00. 00.까지 보고하도록 촉구 공문(전라남도 투자자유치과-00000호)을 발송하였는데도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이 또한 관련 보고를 일절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투자자유치과)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도 나주시에서 보고가 없자 2021. 00. 00. 2021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면서 나주시(일자리경제과)로 하여금 (주)○○○○○○○○에 대하여 같은 해 00. 00.까지 환수하도록 통보(전라남도 투자자유치과-0000호)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라남도(투자자유치과)가 나주시(일자리경제과)에 위 기업에 대하여 전액 환수하도록 공문 외에도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독촉하였는데도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

2) 2020. 00. 00.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과-000호)는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완료검토 요청건에 대하여 (주)○○○○○○○○에 대하여 산통부 지원고시(2008-000호) 제6조 제4호 및 제14조 제7항에 따른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 유지 의무를 미충족하여 지방투자보조금 전액 환수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견통보

였다.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 기회가 박탈되고, 보조금 약 13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1) ○○○의 경우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1년 6개월 동안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관련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20. 00. 00. 전라남도(투자유치과)의 (주)○○○○○○○○에 대한 환수계획 보고 통보문서를 받은 후 2020. 00. 00. 까지 환수계획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개월 동안 관련보고를 하지 않았고, 2020. 00. 00. 전라남도(투자유치과)로부터 위 기업에 대한 환수계획을 2020. 00. 00.까지 다시 보고하도록 촉구하였는데도 이 또한 ○○○으로 발령나기 전인 2021. 00. 00.까지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전라남도 투자유치과 ○○○ 주무관이 2회에 걸친 공문시행에도 나주시에서 관련 보고를 하지 않자 나주시 업무담당자 ○○○로 하여금 위 기업에 대하여 전액 환수하도록 공문 외에도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독촉하였는데도 관련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으로 발령나기 전인 2021. 00. 00. 까지 환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과 관련한 나주시의 소극행정은 기업관리 부실로 이어져 산업통상자원부의 잦은 지적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등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의 경우

지방○○주사 ○○○은 2018.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2년 3개월 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서 (주)○○○○○○○○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환수계획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지방○○주사 ○○○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20. 00. 00. 전라남도(투자유치과)로부터 (주)○○○○○○○○에 대한 환수계획 보고 통보문서가 시행된 후 2020. 00. 00.까지 환수계획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업무담당팀장으로서 알고 있으면서도 ○○○○과로 발령나기 전인 2021. 00. 00까지 6개월 동안 업무담당자가 관련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한 업무담당자인 ○○○이 위 기업에 대한 환수계획 보고를 2020. 00. 00.까지 전라남도(투자유치과)로 제출하지 않아서 전라남도(투자유치과)로부터 2020. 00. 00.까지 환수계획을 다시 보고하도록 촉구받았는데도 이 또한 ○○○○과로 발령나기 전인 2020. 00. 00.까지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제2-다-(1)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3.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특정감사 처리 태만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는 202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전라남도(감사관실)로부터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정감사를 수감한 후 같은 해 00. 00. 전라남도 감사관-0000호를 통하여 (주)○○○○과 ○○, (주)○○○ 등 3개업체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주)○○○○ 등 5개 업체는 일정기간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기 등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를 통보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정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위 업체들에 대하여 관련 보조금 회수, 부기등기 등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회수업무 처리 태만

그런데 나주시(일자리경제과)는 2020. 00. 00. 전라남도 감사관-0000호를 통하여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대한 특정감사 결과 (주)○○○○과 ○○, (주)○○○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수도권 기존사업장 미폐쇄 등 위반으로 [표 2] “전라남도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과 같이 보조금 약 10억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은 후 그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인 2020. 00. 00.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고 처리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표 2] 전라남도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

(단위 : 천원)

업 체 명	지 적 내 용	
	환수사유	환수금액
계		1,078,702
○○	고용인원 미충족	400,000
(주)○○○○○	수도권 기존사업장 미폐쇄	649,604
(주)○○○	고용인원 미충족	29,098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특정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자, 2020. 00. 00. 전라남도 투자유치과-0000호를 통하여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같은 해 00. 00.까지 제출하도록 전라남도 투자유치과가 또다시 요구

하였는데도 이 또한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그리고 나주시 감사실이 위와 같이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2021. 00. 00. 나주시 감사실-000호를 통하여 같은 해 00. 00.까지 특정감사 조치결과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2021. 00. 00.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000호를 통하여 특정감사 결과 처리결과를 120일(약 4개월)이나 지연하여 처음으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서 (주)○○○○과 ○○, (주)○○○ 등 3개 업체에 대하여는 회수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아울러 그 이후에도 (주)○○○에 지원한 보조금은 회수한 반면, (주)○○○○과 ○○ 등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처리기한을 1년 1개월이나 지연하고도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제2-다-(1)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등 지연처리

그런데 나주시(일자리경제과)는 2020. 00. 00. 전라남도 감사관-0000호를 통하여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주)○○ 등 19개 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 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고, (주)○○○○ 등 5개 업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담보제공 하여 일정기간 이행요구 또는 시정하도록 요구를 받았으면 그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인 2020. 00. 00.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처리계획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위 특정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자, 2020. 00. 00. 전라남도 투자유치과-0000호를 통하여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전라남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같은 해 00. 00.까지 제출하도록 전라남도 투자유치과가 또 다시 요구하였는데도 이 또한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그리고 나주시 감사실이 위와 같이 특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2021. 00. 00. 나주시 감사실-000호를 통하여 같은 해 00. 00.까지 특정감사 조치결과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2021. 00. 00.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000호를 통하여 특정감사 결과 처리결과를 120일(약 4개월)이나 지연하여 처음으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서 (주)○○○○○ 업체를 제외한 18개 기업은 부기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주)○○○○○ 등 5개 업체 또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추진 중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나주시 종합감사 기간 중에 특정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한 결과, 2020. 00월말까지는 위 지적된 대부분의 처분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추진은 하고 있으나 일부사항은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년 3개월이 지난 2021. 00. 00.이 되어서야 (주)○○○○○○○ 등 15개 기업에 대하여 부기등기 요청하여 (주)○○○○○○○은 1년 1개월이나 지연하여 부기등기 하였고, (주)○○○○○은 감사기간 중인 2021. 10. 28. 부기등기 되었다고 제출하였다.

그리고 (주)○○○○○ 등 5개 업체는 1년 3개월이 지난 2021. 00. 00.이 되어서야 담보제공 사후승인 이행요구하여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도 담보제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처리를 지연하여 관련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제2-다-(1)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1) ○○○의 경우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1년 6개월 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관련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20. 00. 00. 전라남도 감사관-0000호를 통하여 2020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면 (주)○○○○○과 ○○, (주)○○○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약 10억원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주)○○○ 등 19개 업체는 부기등기를 (주)○○○○○ 등 5개 업체는 시장의 사후담보제공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여 그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인 2020. 00. 00. 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위 특정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자, 전라남도(투자유치과)가 2020. 00. 00.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전라남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같은 해 00. 00.까지 제출하도록 전라남도 투자유치과-0000호로 또다시 요구하였는데도 이 또한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 투자유치과 ○○○ 주무관으로부터 위 3개 기업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는 전액 환수하도록 공문 외에도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여러 차례 독촉을 받았는데도 ○○○으로 발령나기 전인 2021. 00. 00.까지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관련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주)○○ 등 19개 업체의 부기등기와 (주)○○○○ 등 5개 업체의 사후담보제공 승인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으로 발령나기 전인 2021. 00. 00.까지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관련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제2-다-(1)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의 경우

○○○은 2018.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2년 3개월 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서 위 (주)○○○○ 등 3개 기업에 대하여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지원 보조금 회수업무 및 부기등기와 담보제공 승인업무 등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 지방○○주사 ○○○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20. 00. 00. 전라남도 감사관-0000호를 통하여 2020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면 (주)○○○○과 ○○, (주)○○○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약 10억원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주)○○ 등 19개 업체는 부기등기를 (주)○○○○ 등 5개 업체는 시장의 사후담보제공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여 그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인 2020. 00. 00.까지는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업무담당팀장으로서 업무담당자인 ○○○이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한 위 특정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자, 전라남도(투자유치과)가

2020. 00. 00.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전라남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같은 해 00. 00.까지 제출하도록 전라남도 투자유치과-0000호로 또다시 요구하였는데도 업무담당팀장으로서 업무담당자인 ○○○이 이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제2-다-(1)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나주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하여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고 매몰차게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것이 비록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하더라도 나주시로서 선택하기 어려운 고민이었고, 행정적인 역할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환수조치가 계속 지연된 사정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0. 00. 00. 전라남도(투자유치과)로부터 (주)○○○○○○○○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 미충족에 따른 전액환수(약 13억원) 통보를 3차에 걸쳐서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은 점, 위 기업에 대하여 전액환수하도록 공문 외에도 전화 등으로 수차례 독촉하였는데도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은 점, 2020. 00. 00.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주)○○○○과 ○○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수도권 기존사업장 미폐쇄 등으로 보조금 10억원을 환수 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는데도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점, 특히 전라남도 특정감사 처분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않자 나주시 감사실로부터 2차례에 걸쳐 독촉공문을 받았는데도 환수 절차를 미이행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상시고용인원 미충족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업무를 태만히 하고,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특정감사 실시 결과 보조금 환수 등 시정요구를 받고도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지방○○주사 ○○○과 지방○○주사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① 상시고용인원 미충족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업무를 태만히 하고,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특정감사 실시 결과 보조금 환수 등 시정요구를 받고도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지방○○주사 ○○○과 지방○○주사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 ②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환수 업무 등 처리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와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시기 바라며(훈계)
- ③ (주)○○○○○○○○, (주)○○○○, ○○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세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년부터 2021. 10월까지 [표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같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2018~2021.10월)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8년	179,641	171,699	857	7,085
2019년	173,315	165,459	813	7,043
2020년	186,810	179,086	746	6,978
2021년	174,938	164,518	1,226	9,194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2021. 10. 29. 기준)

2.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에 한하여 임시용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정 과세표준 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세무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 [표 2]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추징대상 현황”과 같이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해당 임시용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4건 6,773천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아 자주 재원 확충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표 2]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추징대상 현황

(단위 : 원)

연번	과세대상 물건지	납세자	신고일	추징세액	사유
	계	4건		6,773,750	
1	나주시 ○○면 ○○리 000 가설건축물 1,420.75㎡ 신축	○○○	2018.00.00.	937,670	미신고
2	나주시 ○○○ 000 가설건축물 509.04㎡ 신축	○○건설	2020.00.00.	4,203,840	미신고
3	나주시 ○○면 ○○리 000 가설건축물 1,072.4㎡ 신축	○○○○영농조합법인	2019.00.00.	660,230	미신고
4	나주시 ○○읍 ○○리 000 가설건축물 656.03㎡ 신축	○○○○주식회사	2020.00.00.	972,010	미신고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10. 29.) 기준 가산세 포함

2.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납세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했는데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세무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 [별표 1] “지목변경 취득세 추징대상 명세”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 가액이 증가 되었는데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20건 6,256천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하지 않아 자주재원 확충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3.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분 추징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세무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 [별표 2]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추징대상 명세”와 같이 과세대상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감한 취득세 31건 90,813천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4. 지하수 굴착신고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면허를 발급받는 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지하수 굴착행위의 신고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세무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 [별표 3] “지하수 굴착 신고 등록면허세 추징대상 명세”와 같이 굴착행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61건 1,816천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위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부과(추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부과(추징) 누락된 취득세 등 105,660천원을 부과(추징)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교통행정과)

내 용

나주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1. 사망자에 과태료 부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등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실시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97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교통행정과)는 2006년부터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의

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2016. 00. 00. 사망한 ○○○에게 2018. 2. 9. 463천원을 부과하는 등 [별표 1] “세외수입 사망자 부과취소 대상”과 같이 219건 145,358천원을 잘못 부과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취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¹⁾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의무보험 계약체결 사항을 통지²⁾를 받으면 의무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게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2항 : 보험회사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2일 이내 등)내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교통행정과)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2018. 00. 00.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00두0000 차량 소유주 ○○○에 대한 과태료 600천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2]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대상 명세”와 같이 87건 20,24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관련 과태료 등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소유자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교통행정과)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전남0거0000 차량 등 [별표 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명세”와 같이 정기검사 미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33건 5,1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나주시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검증받지 않은 채로 자동

차를 운행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위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사망자에 대한 부과자료를 부과취소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등을 부과(추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145,358천원을 부과취소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20,243천원과 「자동차관리법」 관련 과태료 5,130천원을 부과(추징) 조치하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도로점용료 및 지역개발공채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건설과, 안전재난과)

내 용

나주시는 진·출입로 목적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 허가를 받는 자에게 점용료 부과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1.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되 해당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

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도로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매년 3월 이내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건설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년 이상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하면서 일부 도로점용 허가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누락하여 [별표 1] “도로점용료 부과누락대상 명세”와 같이 정기분 도로점용료 28건 3,405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2.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조례」 제7조 별표 1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르면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 허가를 받는 자는 점용료 부과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되, 공채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공채매입확인 기관은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 등을 교부할 때 매입필증을 징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건당 점용료 부과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공채 산출액 5천원 이상)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건설과, 안전재난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별표 2] “지역개발공채 징구누락대상 명세”와 같이 66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1,085천원을 매입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형평성·공정성이 있어야 할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소

홀히 하고, 전라남도의 주민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재원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위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도로점용료와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부과(추징) 절차를 이행하고,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부과누락된 도로점용료 3,405천원과 지역개발공채 1,085천원을 부과(추징)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처리대행 용역 계약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9. 00. 00. (주)○○○○○○○○(대표 ○○○)와 ○○○○ ○○○ 처리대행용역 수의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19. 00. 00.~2021. 00. 00., 계약금액 2,106,744,000원, 사업량 19,199톤)하여 가정 및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 ○○○을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청소자원과)는 2019. 00. 00. ○○○○ ○○○ 처리 민간대행 용역에 대하여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에 [표 1] “심의 안건 세부 현황”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기준 등에 대해 계약심의를 의뢰하여 2019. 00. 00. 나주시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위 용역 입찰 건의 심의(안)대로 입찰참가자격에서 지역제한 없이 ○○○○ ○○○ 처리시설이 나주시청을 기준으로 40km이내에 위치한 업체로 하는 입찰참가자격 기준 등에 대해 원안가결¹⁾이 되자 2019. 00. 00. [표 1]의 입찰참가자격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계과에 위 용역 입찰 계약을 의뢰하였다.

1) 의안번호 2019-00호

[표 1] 심의 안건 세부 현황

구 분	내 용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00. 00. ~ 2021. 00. 00.(2년) 처리에정량 : 26.3톤/일(추정치) 단가계약 : 금109,732천원(총금액 2,106,744천원/2년)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단가계약)
입찰참가 자격	①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② 허가용량이 1일 26.3톤 이상으로 ③ ○○○○ ○○○ 운반 거리가 나주 시청을 기준으로 40km이내에 위치한 업체로 ①부터 ③까지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낙찰자 결정방법	전라남도 ○○○○ ○○○ 처리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나주시는 입찰 공고(안)을 마련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입찰참가자
격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참가자격 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회계과)는 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특정업체에 유리
한 입찰참가자격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찰공고
를 하여야 하는데도 [표 2] “입찰참가자격 임의변경 현황”과 같이 이를 임의로
입찰참가 가능 지역을 전라남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2019. 00. 00.과 2019. 00. 00.
입찰공고를 하였다.

[표 2] 입찰참가자격 임의 변경 현황

구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임의 변경한 공고 내용
입찰 참가 자격	①부터 ③까지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② 허가용량이 1일 26.3톤 이상으로 ③ ○○○○ ○○○ 운반 거리가 나주 시청을 기준 으로 40km이내에 위치한 업체	<u>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u> ①부터 ③까지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또는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 중 ② 허가용량이 1일 26.3톤 이상으로 ③ ○○○○ ○○○ 운반 거리가 나주 시청을 기준 으로 40km이내에 위치한 업체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전국의 불특정 ○○○○ ○○○ 처리업체가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고, 결국 위 용역입찰 공고가 2차례(2019. 00. 00., 2019. 00. 00.) 진행되는 동안 (주)○○○○○○○○만 단독 입찰하여 유찰됨으로써 같은 해. 00. 00. (주)○○○○○○○○와 수의계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앞으로 ○○○○ ○○○ 처리 민간대행용역 입찰을 전라남도로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거리제한도 ○○○ ○○○ 처리와 운반이 가능한 범위 이내로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참가자격 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 관광자원화사업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회계과, 산림공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 일대 경관조성을 위하여 2020. 00. 00. (주)○○○○○○○○○○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 관광자원화사업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계약(계약금액 240,000천원)을 체결하였다.

2. 계약기간 연장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지연배상금의 금액·납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1.3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해당 일수를 지연배상금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같은 장 같은 절 6. 용역의 일시정지 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며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 관광자원화 사업 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이하 “○○○○○○○○ 조형물 제작 용역”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의 일시정지나 연장 사유가 발생할 시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의 정지, 변경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연배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나주시는 2020. 00. 00. ○○○○○○○ 조형물 제작 용역을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수행하도록 체결하였고, 2021. 00. 00. 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같은 해 00. 00. 과업기간을 141일 연장하여 2021. 00. 00.에 과업을 완료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산림공원과)는 ○○○○○○○ 조형물 제작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유가 아닌 조형물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의제기 문제 해결을 사유로 용역 수행 만료일(2021. 00. 00.) 3일 전인 2021. 00. 00.에서야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용역 정지를 요청하였고, 회계과는 검토없이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2021. 00. 00. 계약상대자에게 일시정지를 승인하였다.

또한 산림공원은 2021. 00. 00. 회계과에 용역 일시정지 해지 및 변경계약을 요청하면서 발주기관의 책임이 아닌데도 지연배상금 부과 등의 검토없이 과업기간 종료일을 당초 2021. 00. 00.에서 141일 연장된 2021. 00. 00.로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회계과도 지연배상금 부과 등의 조치없이 2021. 00. 00. 계약상대자에게 변경계약을 연장 통보하였다.

그로 인하여 당초 과업기간 내 완성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약 43,992천원¹⁾을 부과하지 않은 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용역감독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1) 계약금액 240,000,000원*1.3/1000*141일(용역정지요청기간~정지해제일)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에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 또는 위임받은 감독공무원은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하여 승인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 조형물 제작 용역에 대한 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한편 나주시는 2020. 00. 00. 제2020-0000호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 조형물 제작 용역을 공고하면서 조형물 및 실물모형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2020. 00. 00. (주)○○○○○○○○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부서(산림공원과)에 계약 체결사항을 통보하면서 위 용역에 대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용역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산림공원과)는 2021. 00. 00. 계약상대자인 (주)○○○○○○○○이 제출한 ○○○○○○○○ 조형물 제작 용역의 완료계 및 내역서에 대하여 조형물이 당초 계약상대자인 (주)○○○○○○○○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에서 제작된 후 납품되었는데도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와 다르다는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21. 00. 00.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형물 저작권 문제 해결 등을 사유로 용역 중지 및 변경계약을 통해서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참여인력(총 10명) 및 조직편성표 명단에도 없는 정당하지 않은 참여자가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용역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계약목적물의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협상에 의한 계약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한 계약상대자가 아닌 자에게 조형물을 납품받고 조형물 납품으로 58,000천원이 지급되게 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앞으로 계약기간 연장 업무 처리 시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회계과, 산림공원과, 도시재생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계약 이행의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지방계약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형식의 부적절한 계약체결

나주시는 2020. 00. 00. ○○○○○○○ 일대에 ‘○○○○○ ○○○○전시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 외 1개사(건축사사무소 ○○○)와 899,916천원¹⁾에 체결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공모 등의 방법 중에 하나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1) 실시설계 139,916,000원 전시물 제작 등 760,000,000원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며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적용되고,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²⁾ 및 입찰가격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및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편에 따르면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10인 이내의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³⁾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여야 하고,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협상의 의한 평가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공모의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따른 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용역근로자보호지침 등
(정성적 평가) 지식·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등

3) (정량적 평가) 참여기술자 현황, 수행경험(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
(정성적 평가) 공사설계는 설계의 우수성·예술성·안전성·기능성,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수행방법 및 계획 등, 물품제조는 디자인의 우수성·예술성·기능성,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수행방법 및 계획 등

그런데 나주시(산림공원과)는 2020년 7월 ‘○○○○○ ○○○○전시관 건축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을 추진하면서 건축설계는 공모를 통한 계약의 방법으로, 전시물 제작 설치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각각 별도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공동계약⁴⁾의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설계공모와 협상에 의한 평가방법을 혼용하여 평가하여 2020. 00. 00. (주)○○○○○○ 외 1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고 공정하게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지방계약법령의 취지가 훼손되었고, 입찰가격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건축설계 공모에 대하여 입찰가격 점수가 반영되는 제안서 평가방식이 적용되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가 선정되지 못할 우려가 초래되었다.

3. 공사, 용역이 혼재된 사업의 계약 추진 부적정

나주시는 2021. 00. 00. ○○길 일원에 ○○○ ○○○○길 조성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와 133,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검토하도록 되

4) (전시물 제작 설치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분야)로 신고된 업체
(건축분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최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 방법 등을 검토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물품과 용역에 한하여 체결하고, 계약 목적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도시재생과)는 2021. 00월 [표] “○○○ ○○○○길 조성사업 공정별 현황”과 같이 창작 및 디자인비 등 디자인설계, 제작시공설치가 혼재된 계약목적물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공사가 70.1% 포함되어 있는데도 위 사업 전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 ○○○○길 조성사업 공정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공정별	계약금액	비율(%)
	계	133,000,000	100%
용역	1. 창작 및 디자인비	4,000,000	8.5%
	2. 실시설계비	7,300,000	
공사	3. 포장	15,000,000	70.1%
	4. 벽화	20,000,000	
	5. 식재정비	3,000,000	
	6. 야간 고보조명	10,000,000	
	7. 바닥매립 등	20,000,000	
	8. 쉼터정비	14,400,000	
	9. 펜스 제작설치	10,800,000	
기타	10. 기타간접비, 일반관리비 등	28,500,000	21.4%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절하게 추진하여 계약법령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준수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용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통보

제 목 도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일자리경제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표 1] “투자유치보조금 집행현황”과 같이 70개 기업에 21,21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투자유치보조금 집행현황(2018~2021년)

(단위 : 백만원)

연도	교부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1,215	5,744	7,828	8,043	20,097	5,024	7,444	7,629
2018	7,260	1,791	2,735	2,734	6,602	1,391	2,606	2,605
2019	5,334	1,504	1,914	1,916	4,823	1,422	1,699	1,702
2020	5,397	1,817	1,790	1,790	5,397	1,817	1,790	1,790
2021	3,624	632	1,389	1,603	3,275	394	1,349	1,532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제34조 1항에 따르면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하거나 관내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이 되면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일자리경제과)는 2009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 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표 2] “투자유치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목록 현황”과 같이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도가 나고 경매가 되어 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주)○○○ 등 3개 기업에 지원한 835백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 계획을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는 등 환수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투자유치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목록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연도	기업명	보조 유형	교부액			환수사유
			계	도비	시군비	
계	3개 업체		835	417.5	417.5	
2009년	(주)○○○	입지	200	100.0	100.0	부도
2017년	(주)○○○	입지	400	200.0	200.0	경매
2018년	(주)○○○	입지	235	117.5	117.5	경매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도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 기회를 상실시키고 지원된 835백만원의 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받고 의무 불이행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주)○○○ 등 3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조속히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건축허가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아동수당·가족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아동수당법」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사업안내」 제6편 수급자관리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보건복지부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IX. 보육 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하되,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수급 아동과 영유아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표 1] “국외체류 대상자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읍 ○○○ 등 19명에게 7,5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국외체류 대상자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과다 지급 현황(2018.11월~2021.9월)

(단위 : 명, 원)

구분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출국일자	90일 시점	과다 지급		
						지급기간	개월	금액
계	19명							7,500,000
아동수당	14명							5,200,000
	○○○	○○읍	2013.00.00.	2018.08.04.	2018.11.01.	2018.12.~2019.03.	4	400,000
	○○○	○○읍	2015.00.00.	2018.08.04.	2018.11.01.	2018.12.~2019.04.	4	400,000
	○○○	○○면	2014.00.00.	2018.08.27.	2018.11.24.	2018.12.	1	100,000
	○○○	○○면	2017.00.00.	2018.08.27.	2018.11.24.	2018.12.	1	100,000
	○○○	○○동	2015.00.00.	2018.12.04.	2019.03.03.	2019.04.	1	100,000
	○○○	○○면	2013.00.00.	2018.12.30.	2019.03.29.	2019.04.	1	100,000
	○○○	○○읍	2017.00.00.	2019.01.26.	2019.04.25.	2019.05.~08.	4	400,000
	○○○	○○읍	2017.00.00.	2019.01.31.	2019.04.30.	2019.05.~06.	2	200,000
	○○	○○읍	2015.00.00.	2019.02.24.	2019.05.24.	2019.06.~08.	3	300,000
	○○	○○읍	2016.00.00.	2019.02.24.	2019.05.24.	2019.06.~08.	3	300,000
	○○○	○○동	2014.00.00.	2019.11.12.	2020.02.09.	2020.03.	1	100,000
	○○○	○○동	2016.00.00.	2019.11.12.	2020.02.09.	2020.03.	1	100,000
	○○○	○○○동	2014.00.00.	2020.01.31.	2020.04.29.	2020.05.~2021.02.	10	1,000,000
	○○○	○○○동	2016.00.00.	2020.02.28.	2020.05.27.	2020.06.~2021.09.	16	1,600,000
가정양육수당	5명							2,300,000
	○○○	○○동	2015.00.00.	2018.12.04.	2019.03.03.	2019.04.~2019.10.	1	100,000
	○○	○○동	2019.00.00.	2019.08.18.	2019.11.15.	2019.12.~2020.04.	5	1,000,000
	○○○ ○○○○	○○면	2015.00.00.	2020.08.07.	2020.11.04.	2020.12.~2021.01.	2	200,000
	○○○	○○동	2015.00.00.	2020.08.12.	2020.11.09.	2020.12.~2021.04.	5	500,000
	○○○	○○동	2018.00.00.	2020.08.12.	2020.11.09.	2020.12.~2021.04.	5	500,0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신규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 이내에 가구별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사회복지과)는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기초연금 수급자 ○○면에 거주하는 ○○○ 등 13명에게 [표 2] “신규 기초연금 과소지급 현황”과 같이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분 4,773,86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 신규 기초연금 과소 지급 현황(2018~2021.9월)

(단위 : 명, 원)

연도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최 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 초 지급일	총 지급액	과소 지급	
								개월	금액
계	13명								4,773,860
2018	○○○	○○면	1953.00.00.	2018.09.01.	120,000	2018.10.25.	120,000	1	120,000
	○○○	○○○동	1953.00.00.	2018.10.02.	200,000	2018.11.23.	200,000	1	200,000
2019	○○○	○○면	1954.00.00.	2019.01.30.	230,000	2019.04.25.	230,000	3	661,860
	○○○	○○동	1954.00.00.	2019.04.16.	253,750	2019.07.25.	253,750	2	507,500
	○○○	○○면	1954.00.00.	2019.05.29.	253,750	2019.08.23.	253,750	2	507,500
2020	○○○	○○면	1954.00.00.	2019.11.29.	300,000	2020.01.23.	300,000	2	600,000

연도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최 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 초 지급일	총 지급액	과소 지급	
								개월	금액
	○○○	○○동	1955.00.00.	2020.01.22.	300,000	2020.03.25.	300,000	1	300,000
	○○○	○○면	1955.00.00.	2020.07.20.	203,800	2020.09.25.	203,800	1	203,800
2021	○○○	○○동	1955.00.00.	2020.11.06.	300,000	2021.02.25.	300,000	2	600,000
	○○○	○○면	1956.00.00.	2020.12.09.	293,200	2021.02.25.	293,200	1	293,200
	○○○	○○면	1956.00.00.	2020.12.18.	240,000	2021.02.25.	240,000	1	240,000
	○○○	○○면	1956.00.00.	2021.01.11.	300,000	2021.03.30.	300,000	1	300,000
	○○○	○○면	1956.00.00.	2021.05.21.	240,000	2021.07.23.	240,000	1	240,0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제소득 미반영 지원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매년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의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그 밖의 금품은 수급자의 실제소득¹⁾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3편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연계²⁾되지 않는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금, 이·통장 직책수당 등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금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급자의 실제소득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1)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수급자의 소득에 자동 반영되나, 지자체 지원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및 자료 입력 필요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는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0,000원과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이장수당³⁾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소득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산정하여 [표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지급 현황”과 같이 ○○면에 거주하는 ○○○ 등 9명에게 생계급여 7,60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 지급 현황(2018.11월~2021.9월)

(단위: 원)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현황				과다 지급	
			구분	지급 개시	지급 최종	월 지급액	개월	금액
9명								7,600,000
○○○	○○면	1946.00.00.	참전명예수당	2020.10.	2021.09.	100,000	12	1,200,000
○○○	○○면	1950.00.00.	참전명예수당	2020.10.	2021.09.	100,000	12	1,200,000
○○○	○○면	1950.00.00.	참전명예수당	2020.10.	2021.09.	100,000	12	1,200,000
○○○	○○면	1932.00.00.	참전명예수당	2021.01.	2021.09.	100,000	9	900,000
○○○	○○면	1928.00.00.	참전명예수당	2021.03.	2021.09.	100,000	7	700,000
○○○	○○면	1927.00.00.	참전명예수당	2021.05.	2021.09.	100,000	5	500,000
○○○	○○○동	1947.00.00.	참전명예수당	2021.06.	2021.09.	100,000	4	400,000
○○○	○○○동	1933.00.00.	참전명예수당	2021.06.	2021.09.	100,000	4	400,000
○○○	○○동	1962.00.00.	이장수당	2020.11.	2021.09.	300,000	11	1,100,0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3) 2020년부터 이·통장 등 직책수당(회의수당포함)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시 20만원 범위내 공제 적용

(2) 신규 수급권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는데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는 등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며, 과다 지급된 급여는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 건축허가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동에 거주하는 ○○○ 등 2명에게 [표 4] “신규 생계급여 과다·과소 지급 현황”과 같이 생계급여 354,300원을 과다 지급 및 248,31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또한 ○○○동에 거주하는 ○○○ 등 4명에게 [표 5] “신규 주거급여 과소 지급 현황”과 같이 주거급여 672,36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4] 신규 생계급여 과다·과소 지급 현황(2018.11월~2021.9월)

(단위 : 명, 원)

연도	성명	주 소 (읍면동)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		과다·과소지급		
					지급일	지급액	유형	개월	지급액
계	2명								602,610
2020	○○○	○○동	2020.00.00.	177,150	2020.12.29.	708,640	과다	2	354,300
2021	○○○	○○면	2021.00.00.	248,340	2021.05.13.	745,050	과소	1	248,31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신규 주거급여 과소 지급 현황(2018.11월~2021.9월)

(단위 : 명, 원)

연도	성명	주 소 (읍면동)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		과소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계	4명							672,360
2018	○○○	○○○동	2018.00.00.	76,680	2018.12.20.	76,680	2	153,360
2019	○○○	○○읍	2019.00.00.	161,000	2019.04.19.	322,000	1	161,000
2020	○○○	○○면	2019.00.00.	100,000	2020.05.20.	400,000	2	200,000
2021	○○○	○○동	2020.00.00.	158,000	2021.01.20.	637,000	1	158,0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9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임차(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 안내」 제4편 주거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입원일을 기준으로 90일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임차급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거급여 대상 가구원 전체가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한 경우에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건축허가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거급여 대상자 중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장기 입원에 따른 주거급여를 중단하여야 하는데도 [표 6]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 등 11명에게 총 1,108,61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입원 3개월은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표 7]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소 지급 현황”과 ○○○ 등 4명에게 643,800원의 주거급여를 과소 지급하였다.

[표 6]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다 지급 현황(2018.11월~2021.9월)

(단위 : 명, 원)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월 지급액	최종 지급일	입원일	퇴원일	과다 지급기간	과다지급	
								개월	지급액
11명									1,108,610
○○○	○○동	1933.00.00.	53,810		2018.11.15.	2019.04.30.	2019.03.	1	53,810
○○○	○○면	1944.00.00.	88,200	2019.09.20.	2019.05.29.	2019.12.13.	2019.11.	1	88,200
○○○	○○면	1971.00.00.	94,800	2020.02.20.	2019.10.20.		2020.02.	1	94,800
○○○	○○면	1964.00.00.	94,800	2020.02.20.	2019.10.21.		2020.02.	1	94,800
○○○	○○면	1930.00.00.	94,800	2020.03.20.	2019.11.14.		2020.03.	1	94,800
○○○	○○면	1980.00.00.	94,800	2020.03.20.	2019.12.01.		2020.03. 2020.08.	2	189,600
○○○	○○동	1941.00.00.	94,800	2020.08.20.	2020.04.08.		2020.08.	1	94,800
○○○	○○면	1955.00.00.	104,400	2020.12.28.	2020.08.11.		2020.12.	1	104,400
○○○	○○면	1965.00.00.	97,800		2020.11.04.	2021.03.29.	2021.02.	1	97,800
○○○	○○면	1931.00.00.	97,800	2021.06.18.	2021.03.02.		2021.06.	1	97,800
○○○	○○○동	1958.00.00.	97,800	2021.08.20.	2021.05.01.		2021.08.	1	97,8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7]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소 지급 현황(2018.11월~2021.9월)

(단위 : 명, 원)

성명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월 지급액	최종 지급일	입원일	퇴원일	과소 지급기간	과소지급	
								개월	지급액
4명									643,800
○○○	○○면	1942.00.00.	88,200	2019.03.20.	2018.11.06.	2019.05.31.	2019.06.~08.	3	264,600
○○○	○○동	1933.00.00.	94,800	2020.08.20.	2020.04.22.	2020.08.12.	2020.05.09.	2	189,600
○○○	○○동	1933.00.00.	94,800	2020.01.20.	2019.09.30.	2020.09.15.	2020.09.	1	94,800
○○○	○○동	1960.00.00.	94,800	2020.04.20.	2019.12.16.	2020.05.08.	2020.06.	1	94,8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4) 장제급여 지급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가구당 750,000원(2020년부터 8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책임진 자가 장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사망자 21명의 수급자 가족 또는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별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명세”와 같이 총 16,6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가족이나 실제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적극적으로 장제급여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장제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진료비 심사청구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제3편에 따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의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에 의료지원을 할 수 있고, 의료지원 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2020년 7월 31일부터

200만원 이상⁴⁾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 외의 부담청구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시·군은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하여 환불금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의료지원 금액의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2020년 7월 31일부터 20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담청구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150만원 이상(2020년 7월 31일부터 200만원 이상) 지원한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부담청구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2] "부담청구 확인 요청 미실시 명세"와 같이 34건 74,370,573원에 대하여 일체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차단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6. 의료급여를 지급한 장애인보조기기 사후점검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제3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절차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청구하는 경우 시·군에서는 전문의 처방전 및 장애 유형별 지급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보조기기 구입비용)를 지급할 수 있고, 의료급여 지급 후 3개월,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급 받은 가구를 방문하여 장애인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의료급여를 지급 후 3개월,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급권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경우 지급한 급여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4) 전라남도 사회복지과-000000(2020.00.00.), 00000(2020.00.00.), 0000(2021.00.00.) 확인요청액 200만원 상향(시행일 2020.7.31.부터 2021.6.30.까지)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별표 3] “장애인보조기기 사후관리 미실시 명세”와 같이 37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비용으로 의료급여를 지급한 후 3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장애인보조기기의 부정수급과 지급한 보조기기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아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수급자 43명에게 과소지급된 생계·주거급여·기초연금·장제급여 22,938,330원을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한 40명에 대해 16,562,91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긴급의료비 부당청구 확인과 장애인보조기기 사후관리를 이행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보육시설 지도·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표 1] “보육시설 현황”과 같이 관내 보육시설 86개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표 1]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어린이집						어린이집연합회
	소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직장	
86	85	18	8	22	28	9	1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미준수

(1)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 미달 집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급간식비를 아동 1인당 최소 1,750원(2020년부터 1,900원)이상으로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누리과정의 경우 2,000원(2020년부터 2,500원)이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1인당 급간식비를 최소 1,750원(2020년부터 1,900원)이상으로 지출하여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는지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2] “급간식비 기준단가 미달 집행 어린이집 현황”과 같이 ○○○○○어린이집 등 45개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의 1인당 급간식비를 최소 기준단가에 못 미치게 집행하였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급간식비 기준단가 미달 집행 어린이집 현황(2018~2020년)

(단위 : 원)

어린이집명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집행 단가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8개소	15개소	12개소
○○○○○어린이집			1,879
○○어린이집	1,129		
○○○어린이집		1,635	
○○○어린이집	1,745	1,745	1,745
○○어린이집			1,881
○○어린이집	1,590	1,628	
○○○어린이집	1,480		
○○○○○○어린이집	1,355	1,441	1,641
○○○어린이집			1,817
○○○○어린이집	1,391	1,376	1,239
○○○○○○어린이집		1,530	1,770
○○○어린이집	1,745		
○○○어린이집	1,691		1,786
○○○○어린이집	1,614		
○○어린이집		1,603	
○○○○어린이집	1,745	1,745	
○○○○○○어린이집			1,736
○○어린이집		1,735	

어린이집명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집행 단가		
	2018년	2019년	2020년
○○○○어린이집	1,745	1,745	
○○○○어린이집	1,743		
○○○○어린이집	1,745	1,745	1,805
○○○어린이집	1,325	1,745	
○○○○어린이집	1,500		
○○어린이집	1,325	1,745	
○○어린이집			1,800
○○어린이집	1,745	1,745	1,800
○○○어린이집	1.403	1.685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사회보험 등 소득신고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부록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원장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으로 사회보험, 퇴직적립금의 산출소득에 해당되어 별도의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보육시설의 원장 직책급에 대하여 사회보험, 소득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는지 상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표 3]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소득신고 미 실시 현황”과 같이 ○○○○○어린이집 등 41개소에서 직책급 469,827,770원을 소득신고액에 누락하여 사회보험, 소득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소득신고 미 실시 현황(2018~2021.9월)

(단위 : 원)

어린이집명	원장명	직책급 소득신고 미 실시 금액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1개소		469,827,770	82,851,450	129,147,770	91,181,400	166,647,150
○○○○○어린이집	○○○	5,600,000				5,600,000
○○어린이집	○○○	5,400,000				5,400,000
○○어린이집	○○○	6,600,000				6,600,000
○○어린이집	○○○	6,900,000				6,900,000
○○○어린이집	○○○	7,000,000				7,000,000
○○어린이집	○○○	7,800,000				7,800,000
○○○어린이집	○○○	9,400,000	9,400,000			
○○어린이집	○○○	30,000,000	11,400,000	12,000,000		6,600,000
○○어린이집	○○○	12,000,000				12,000,000
○○어린이집	○○○	8,400,000				8,400,000
○○어린이집	○○○	6,600,000				6,600,000
○○○○○어린이집	○○○	4,200,000				4,200,000
○○어린이집	○○○	6,400,000				6,400,000
○○○어린이집	○○○	32,200,000	3,200,000	11,000,000	12,000,000	6,000,000
○○○어린이집	○○○	24,800,000	8,000,000	9,600,000	7,200,000	
○○○○○어린이집	○○○	13,800,000				13,800,000
○○어린이집	○○○	25,510,000	10,910,000	9,300,000	5,300,000	
○○○어린이집	○○○	20,000,000		20,000,000		
○○○i어린이집	○○○	2,700,000		300,000	600,000	1,800,000
○○어린이집	○○○	36,700,000	7,100,000	9,600,000	12,000,000	8,000,000
○○○○○어린이집	○○○	29,600,000	9,600,000	9,600,000	9,600,000	800,000
○○어린이집	○○○	4,000,000			1,000,000	3,000,000
○○○○○○○어린이집	○○○	16,500,000	4,500,000	12,000,000		
○○○○○어린이집	○○○	8,200,000	4,000,000			4,200,000
○○○○○어린이집	○○○	10,400,000			3,200,000	7,200,000
○○○어린이집	○○○	7,200,000				7,200,000
○○어린이집	○○○	2,300,000				2,300,000
○○○○○어린이집	○○○	8,000,000				8,000,000

어린이집명	원장명	직책급 소득신고 미 실시 금액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어린이집	○○○	3,235,000	900,000	350,000	1,830,000	155,000
○○어린이집	○○○	9,000,000	1,000,000	1,000,000	5,500,000	1,500,000
○○○○어린이집	○○○	18,600,000	6,200,000	5,600,000	3,200,000	3,600,000
○○어린이집	○○○	4,476,000		3,576,000		900,000
○○○○어린이집	○○○	11,300,000			6,400,000	4,900,000
○○어린이집	○○○	5,150,500	300,000		4,850,500	
○○○어린이집	○○○	1,500,000		1,500,000		
○○○어린이집	○○○	16,600,000	600,000	11,000,000		5,000,000
○○어린이집	○○○	8,400,000	2,000,000	4,000,000	2,400,000	
○○어린이집	○○○	7,000,000			7,000,000	
○○○○○○○○○○어린이집	○○○	7,000,000	1,000,000	2,400,000	2,400,000	1,200,000
○○○어린이집	○○○	12,356,270	1,741,450	3,921,770	4,300,900	2,392,150
○○○○○어린이집	○○○	7,000,000	1,000,000	2,400,000	2,400,000	1,200,0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어린이집 원장 전임규정 위반 및 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IV. 보육교직원 관리편에 따르면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원장,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이 가능하며, 원아가 20인 이하인 경우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0~39인 이하 어린이집인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승인한 경우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당의 경우 기본급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각종 제수당을 말하고, 직무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으로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하고, 제수당의 내역(명칭, 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원장 전임 여부와 수당 적정

지급에 대하여 상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어린이집 2개소에서 원장이 운전 또는 조리를 겸임하면서 [표 4] “어린이집 원장 겸임 부적정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19,880,000원을 겸임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데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어린이집 원장 겸임 부적정 수당 지급 현황(2018~2021.9월)

(단위 : 원)

어린이집명	겸임 업무	수당 부당지급액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개소		19,880,000	7,400,000	9,200,000	2,580,000	700,000
○○○○○○어린이집	운전	17,980,000	7,400,000	9,200,000	1,380,000	
○○○○어린이집	조리	1,900,000			1,200,000	700,0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어린이집 등 10개소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업무에 원장이 자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서류를 증빙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표 5] “어린이집 원장 불투명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어린이집 업무에 원장이 자차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불투명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급여를 높게 잡으면 4대 보험 부담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급여를 낮게 잡으면서 급여의 부족한 부분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5] 어린이집 원장 불투명 수당 지급 현황(2018~2021.9월)

(단위 : 원)

어린이집명	수당지급 사유	수당 부당지급액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개소		87,700,000	12,500,000	13,600,000	31,400,000	30,200,000
○○어린이집	어린이집 업무에 자차사용	11,300,000	3,500,000	3,600,000	3,000,000	1,200,000
○○○○○○○○어린이집		200,000				200,000

어린이집명	수당지급 사유	수당 부담지급액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어린이집		9,000,000	1,200,000	2,400,000	3,600,000	1,800,000
○○○어린이집		8,800,000	3,600,000	400,000	3,600,000	1,200,000
○○○어린이집		8,6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1,400,000
○○○○○어린이집		4,800,000			3,600,000	1,200,000
○○○○○○어린이집		8,000,000	1,800,000	2,400,000	2,400,000	1,400,000
○○○○○○어린이집		3,600,000			2,400,000	1,200,000
○○○어린이집		1,400,000				1,400,000
○○○○어린이집		6,000,000		2,400,000	2,400,000	1,200,000
○○○○○어린이집	급여가 적어 수당으로 지급	26,000,000			8,000,000	18,000,0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어린이집 재무·회계 지도·감독 부적정

(1) 전용카드 등 적립 포인트 세입 미조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7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무용품 등 구매, 이웃돕기 등 행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카드사와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에 따르면 시설 운영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어린이집이 농협 등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용 중인 전용카드의 적립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거나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

우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적립금 사용에 따른 증빙자료를 구비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21. 10. 29. 나주시 종합감사기간에 확인한 결과 [별표] “어린이집 전용카드 적립포인트 명세”와 같이 관내 어린이집 59개소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아 적립된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고, 3개소에는 아예 적립조치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어린이집 적립금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특수한 사업을 위해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액의 예산을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시설장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관내 어린이집이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을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어린이집 등 3개소에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특정목적사업을 명시하지 않은 채 [표 6] “어린이집 적립금 적립 및 사용 현황”과 같

이 임의로 운영비와 시설개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회계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6] 어린이집 적립금 적립 및 사용 현황(2018~2021.10월)

(단위 : 천원)

어린이집명	연도별 적립액					시설회계 여입	
	계	2018	2019	2020	2021	일자	금액
3개소	79,650,000	10,500,000	21,150,000	40,000,000	8,000,000		70,516,000
○○어린이집	32,650,000	4,500,000	11,150,000	17,000,000		2020.03.03.	5,000,000
						2021.05.26.	1,000,000
						2021.06.28.	1,400,000
						2021.08.26.	250,000
						2021.10.26.	500,000
○○어린이집	25,500,000		10,000,000	13,500,000	2,000,000	2018.02.20.	5,000,000
						2020.04.14.	10,004,000
○○어린이집	21,500,000	6,000,000		9,500,000	6,000,000	2018.09.28.	17,000,000
						2019.07.30.	5,000,000
						2020.02.27.	15,000,000
						2020.02.27.	862,000
						2021.03.04.	9,500,0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적립금 10,000,000원을 원장 개인통장으로 이체시켜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공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적립한 32,650,000원에서 통장 잔액 8,409,711원과 시설회계로 여입한 8,150,000원을 제외한 16,090,289원이 사용용도 불명으로 부당하게 지출되었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어린이집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4. ○○○○연합회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실적보고서¹⁾에는 그 지방보조사

1)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영수증 등이 첨부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주민생활지원과)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나주시○○○○연합회에 교부한 보조금을 [표 7] “○○○○연합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현황”과 같이 회계연도를 넘겨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미첨부 하는 등 지출 관련 서류가 미흡하며, 물건을 구입하여 적립되는 농협포인트를 개인이 적립하는 등 부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는데도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표 7] ○○○○연합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현황(2018~2019년)

(단위 : 원)

연도	사업명	사업비			정산 부적정사유	집행		
		계	시비	자부담		내역	집행일	집행액
2018	○○○○ 부모교육	6,451,000	3,000,000	3,451,000	세금계산서 등 미첨부	기념품구입	2018.12.29.	2,500,000
					회계연도내 미집행	강사로 및 간식구입	2019.01.02.	500,000
2019	○○○○○ 교육	4,000,000	4,000,000		세금계산서 등 미첨부	프랑카드 제작	2019.03.26.	129,000
					농협포인트 개인적립	음료구입	2019.03.25.	560,000
	○○○○○ 한마음대회	15,000,000	15,000,000		농협포인트 개인적립	생수구입	2019.10.07.	301,000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① 어린이집 2개소에서 원장 전임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한 수당 19,880,000원, 용도를 알 수 없이 지출한 ○○어린이집 적립금 16,090,286원, 어린이집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15,568,430원을 시설회계로 여입조치하고, 소득신고를 미실시한 어린이집 41개소 원장 직책급 469,827,770원에 대하여 소득신고하며.
(시정)

② 앞으로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아동 1인당 최소 금액이상으로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어린이집 원장수당을 지급하며,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보건위생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공중 위생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고, [표 1]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과 같이 그 위생업소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표 1] 식품·공중 위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식품 위생업소									공중 위생업소					
	소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통 단란 주점	집 단 급식소 (위탁)	제 과 점	식품 제조 가공	즉석 판매 제조	기타	소계	숙 박 업	목 욕 장	아· 미 용	세 탁	건물 위생 관리
3,704	3,175	1,589	371	85	168	49	159	285	469	529	57	23	338	44	67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식품·공중위생업주 위생교육 미이수자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업소는 1차에는 과태료 20만원, 2차에는 40만원, 3차에는 60만원을, 공중위생업소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하여 상시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업주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생교육을 미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보건위생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2]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미수료 현황” 및 [별표 1]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미수료 세부 명세”와 같이 ○○식당 등 365개소(2018년 69개소, 2019년 123개소, 2020년 173개소)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47개소만 행정처분을 하고, 식품위생업소 317개소(1차 313개소, 2차 4개소), 공중위생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미수료 현황(2018~2020년)

(단위 : 개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대상 업소	위생교육			대상 업소	위생교육			대상 업소	위생교육		
		수료	미 수료	행정 처분		수료	미 수료	행정 처분		수료	미 수료	행정 처분
계	3,134	3,065	69	30	3,253	3,130	123	17	3,470	3,297	173	
식품위생업소	2,682	2,614	68	29	2,782	2,661	121	15	2,980	2,808	172	
공중위생업소	452	451	1	1	471	469	2	2	490	489	1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식품 제조·가공영업자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자가 자가 품

질검사를 직접 이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가 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6조에 따르면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관내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자가 품질검사 이행여부 등 식품제조·가공 활동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보건위생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표 3]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의 ○○○○ 등 17개소에서 20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하였는데도 2개소 3품목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5개소 17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현황(2018.11월~2021.9월)

(단위 : 개소)

연도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식품유형	검사 주기	행정처분 여부
계	17개소			20품목	행정처분 실시 2개소 3품목	
2019	○○○○○○○	○○면 ○○○길 00	○○○	○○○○○	3개월	부
	농업회사법인 ○○○○○○○○(주)	○○면 ○○길 00	○○○	○○식품	3개월	부
	(주)○○○○○○○	○○농공단지길 00	○○○	○○○○○○○	3개월	부
	○○	○○2길 00, 1층	○○○	○○류	3개월	부
2020	○○○○회 영농조합법인	○○면 ○○길 00	○○○	○○○○○	3개월	부
	○○○○○○○	○○면 ○○○길 00	○○○	○○○○○	3개월	부
	(주)○○○○○○○	○○농공단지길 00	○○○	○○○○○	3개월	부
	○○○○○○○	○○읍 ○○○로 00	○○○	○○○	3개월	부
				○○○	3개월	부
	○○	○○2길 00, 0층	○○○	○○류	3개월	부
	영농조합법인 ○○	○○면 ○○길 0	○○○	○○○○○	2개월	부

연도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식품유형	검사 주기	행정처분 여부
	○○○○○협동조합	○○○로 000	○○○	○○류	3개월	부
	○○○○○ 농업공동체협동조합	○○면 ○○길 000	○○○	○○○	2개월	여
	○○○	○○면 ○○로 000	○○○	○○○○○	3개월	여
				○○○○○	3개월	여
	2021	○○○○○길 00	○○○	○○류	3개월	부
				○○○○○	3개월	부
		○○농공단지길 00	○○○	○○○○○	3개월	부
		영농조합법인 ○○	○○○	○○○○○	2개월	부
		○○○○○협동조합	○○○로 000	○○○	3개월	부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4. 행정처분 관련 업무 추진 소홀

(1) 행정처분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정보 공표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84조에 따르면 시장은 폐기처분,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폐쇄조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위해식품 등의 판매업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과징금처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영업정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가 폐기처분,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폐쇄조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위해식품 등의 판매업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보를 나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보건위생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별표 2] “행정처분 공표 미실시 명세”와 같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98개소(식품위생영업 84, 공중위생영업 14)에 대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등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 시설 개수명령, 허가취소 등, 품목 제조정지, 폐쇄조치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받은 공무원은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등을 지키지 아니하면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영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받은 공무원은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식품·공중위생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보건위생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별표 3] “행정처분 이행 여부 미확인 명세”와 같이 (주)○○○○○○○○ 영업장 폐쇄 등 70건에 대해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이 유통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국민보건의 증진에 저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미이수 및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보를 공표하며, 행정처분 이
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개선요구

제 목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문화예술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 개요

나주시는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게임산업관련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서기 ○○○은 2018.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르면 법 제28조 제3호 단서1)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에 따르면 법 제28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 라목 3)에 따르면 법 제28조 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라목 7)에 따르면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적용 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바목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²⁾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6]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50,000원으로 되어 있다.

2)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따라서 나주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행정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나주시 규칙으로 정하여 감경하여야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문화예술과)는 [표 1] “행정처분 부적정 명세”와 같이 2019. 00. 00. 경품지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과 2019. 00. 00.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으로 적발된 ‘○○○’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규정한 나주시 규칙이 없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부적정하게 2019. 00. 00.과 2019. 00. 00.에 처분하였다

또한 2019. 00. 00.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 ○○PC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적발 건에 대하여 2019. 00. 00. ○○지방검찰청에서 ○○PC 종업원 ‘○○○’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도 ○○PC 주인 ‘○○○’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영업주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했다는 사유만으로 2019. 00. 00. 1차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10일을 부적정하게 취소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9. 00. 00. ○○PC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추가 적발 건에 대하여 2차 처분인 영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만원을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2020. 00. 00. 1차 행정처분인 과징금 50만원으로 처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

[표 1] 행정처분 부적정 명세

업종	위반일	성명	단속내용	행정처분	부적정 내용 (적법한 행정처분)
청소년 게임제공업	2019. 00.00.	○○○ (○○○○)	경품지급기준 위반 (소비자 판매가 132,500원 등 경품)	영업정지 15일	감경기준 없이 1/2 감경 (영업정지 30일)

업종	위반일	성명	단속내용	행정처분	부적정 내용 (적법한 행정처분)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2019. 00.00.	○○○ (○○○○○ PC)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 (2019.00.00. 00:00경 출입)	과징금 25만원	감경기준 없이 1/2 감경 (과징금 50만원)
	2019. 00.00.	○○○ (○○PC)	" (2019.00.00. 00:00경 출입)	행정처분 취소 (○○경찰서 영업주 무혐의 확인)	1차 행정처분 취소 (1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2019. 00.00.		" (2019.00.00. 00:00경 출입)	과징금 50만원	1차 행정처분 (2차 행정처분 : 과징금 150만원)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①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처분을 감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시 규칙으로 정하여 감경처분하시기 바랍니다.(법령상 개선)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남평읍,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송월동, 금남동)

내 용

1. 업무 개요

나주시는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영농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신청농지에 대해 현지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¹⁾를 벗어나면 해당 법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로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며, 이 경우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를 일정 기간을 두고 행정정보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 후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남평읍 등 7개 읍면)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별표 1] “농지 취득한 농업법인 등기사항을 미변경한 법인 명세”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주)○○ 등 10개 법인이 29필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범위 외 사업을 등기상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1)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은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와 기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가 기소유면적의 합한 면적을 확인하여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남평읍 등 11개 읍면동)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도 ○○시 ○○로 000 0000동 000호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같은 세대원으로 신청면적이 1,000㎡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는데도 나주시 ○○면 ○○리 000번지 1,706㎡을 발급하는 등 [별표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1,000㎡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명세”와 같이 19세대가 소유 상한 면적 1,000㎡ 초과하는데도 38필지 26,028㎡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농지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등기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주)○○ 등 10개 법인과 19세대가 취득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여 휴경 등 농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등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기술지원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 개요

나주시는 지역 우수 농산물의 품질 향상·경쟁력 제고 및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농업법인 지원요건 검토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¹⁾”에 적합한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1)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따르면 영농조합법인²⁾과 농업회사법인³⁾에 대하여 사업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현황, 사업 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 유무 등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보조사업 신청 당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검토를 통하여 사업 범위 외 사업이 포함 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법인 해산 청구를 하여야 하고 영위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법인 등기사항부증명서에 사업 범위 외 사업이 [표 1] “농업법 목적 외 사업 현황”과 같이 임대업, 가전제품 판매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농업법인 요건에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농업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표 1]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현황(2018~2020년)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목적 외 사업
계	7개 사업	4개소	
1	2018년 ○ 재배단지 전용 수확기 지원사업	○○○○조합법인	매매 및 임대 지원사업
2	2018년 ○ 재배단지 전용 수확기 지원사업	(주)○○○○영농	가전제품 판매·렌탈사업
3	2018년 ○○○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조합법인	전원마을 조성사업

2)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목적 외 사업
4	2019년 ○○ 경영체 육성사업	○○○○조합법인	매매 및 임대 지원사업
5	2019년 ○○○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조합법인	전원마을 조성사업
6	2020년 ○○○○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조합법인	농지의 임대차 사업
7	2020년 ○○○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	○○○○조합법인	전원마을 조성사업
8	2020년 ○○○○ ○○ ○ 전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조합법인	전원마을 조성사업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사업 범위 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보조금이 지원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농업 시설물 공사 예정가격 임의결정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2억원·전문공사 1억원·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민간자본이전 편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계약대상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1조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2020. 00. 00. 농업법인 특정감사 등을 통하여 농업용 시설물 조성사업 계약이 「지방계약법」 등을 따르지 않고 추진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 조성사업 계약 위법 사례 알림”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 협동조합 등 4개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면서 [표 2] “예정가격 임의결정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과 같이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최저가 입찰 참여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예정가격 임의결정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2019~2020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추정금액 (A)	낙찰금액 (B)	낙찰률 (B/A)
4개사업	4개소			4,781,034	6,978,931	4,303,000	62%
2019년 ○○○○ ○ 유통활성화사업(건축)	○○○○협동조합	벼 건조 저장 시설 증설	임의결정	303,641	479,210	238,000	50%
2019년 ○○○○ ○ 유통활성화사업(기계)	○○○○협동조합	벼 건조 저장 기계설비	임의결정	527,856	791,080	451,000	57%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추정금액 (A)	낙찰금액 (B)	낙찰률 (B/A)
2019년 ○○○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조합 법인	육묘장, 저온창고	임의결정	530,000	988,352	515,000	52%
2019년 ○○○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농업협 동조합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임의결정	586,437	673,003	360,000	53%
2021년 ○○○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농업협동 조합	산지유통시설 신축	임의결정	2,833,100	4,047,286	2,739,000	67%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계약이 공정하지 못하게 추진되었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우려를 초래하였다.

4. 농업 시설물·기계장비 계약 누리장터 이용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2억원·전문공사 1억원·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달청은 민간수요자가 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2015. 1. 5.부터 “누리장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용 대상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농업법인·비영리단체·중소기업 등 민간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시설공사 계약 및 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업 추진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농업정책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법인 등 3개 보조사업자가 농기계 및 시설공사 계약체결에 있어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도 [표 3] “누리장터 이용 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나라장터가 아닌 누리장터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누리장터 이용 계약 체결 현황(2018~2020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낙찰금액	참여업체
계	4개사업	3개소		430,500	
1	2018년 ○ 재배단지 전용 수확기 지원사업	(주)○○○○영농	콤바인 구입	82,000	2개소
2	2018년 ○ 재배단지 전용 수확기 지원사업	○○○○조합법인	콤바인 구입	82,000	2개소
3	2019년 ○○○ 경영체 육성사업	○○○○조합법인	광역살포기 구입	144,400	2개소
4	2020년 ○○○ ○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영농조합법인	RPC 집진시설	122,100	3개소

자료: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동종업체의 참여 기회가 상실되었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우려를 초래하였다.

5. 농업용 농기계 구입 가격 검토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신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분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등에게 사업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업용 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르면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기계를 구입 할 경우에는 영세율(부가가치세 면제)을 적용받고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보조사업자가 농기계 구입 품목과 가격을 정하여 사업신청을 하면 농기계 가격이 적정한지 철저히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 조합법인 등 5개 보조사업자가 콩 전용 수확기 등 4종의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표 4] “농업용 농기계 구입 가격과 조달청 고시단가 비교 현황”과 같이 콩 전용 수확기 등 2종이 조달청 고시 단가(부가가치세 포함) 보다 23,530천원이 높은 데도 구입가격 조정 없이 구입하도록 하는 등 농기계 가격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농업용 농기계 구입 가격과 조달청 고시단가 비교 현황(2018~2020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구입금액(A)	기종/회사명	조달청 고시단가		가격 차액		비고
				부가세 포함(B)	영세율 적용(C)	부가세 포함(A-B)	영세율 적용(A-C)	
계	4명	519,240	3종	193,720	176,110	23,530	41,140	
2018년 ○ 재배단지 전용 수확장비 지원	○○○○ 조합법인	82,000	TH752-CB /○○○○	71,220	64,746	10,780	17,254	
2018년 ○ 재배단지 전용 수확장비 지원	○○○○ 영농조합법인	82,000	TH752-CB /○○○○	71,220	64,746	10,780	17,254	
2018년 ○○○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 조합법인	27,000	PW20R /○○	25,640	23,309	1,360	3,691	
2019년 ○○○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 조합법인	26,250	PW20R /○○	25,640	23,309	610	2,941	

사업명	보조사업자	구입금액(A)	기종/회사명	조달청 고시단가		가격 차액		비고
				부가세 포함(B)	영세율 적용(C)	부가세 포함(A-B)	영세율 적용(A-C)	
2019년 ○ 재배단지 전용 수확장비 지원사업	○○○○ 협동조합	135,990	YH-1150 /○○	-	-	-	-	동일기종 가격차이 (30,010)
2020년 ○○○○ 공동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	○○○○ 조합법인	166,000	YH-1150 /○○	-	-	-	-	

자료: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9년 ○ 재배단지 전용 수확장비 지원사업으로 ○○○○협동조합이 콩 전용 수확기(YH-1150/○○)를 135,990천원에 구입한 반면 같은 기종을 2020년 ○○○○ 공동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자인 ○○○○조합법인에서 30,010천원이 높은 166,000천원에 구입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조달청 고시 단가보다 높게 구입하여 농기계 납품업체에 약 23,530천원 초과 이익을 주는 등 농가 부담은 경감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보조금 등으로 지원된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3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의 진행사항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중앙단위 사업이행 및 점검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 실태 및 사업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기술지원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 시 사업 목적대로 운영 사항 등을 파악하여 부서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표 5] “중요 시설·장비 지원사업 관리 실태 현황”과 같이 2018년 ○○○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 장비 및 농기계 운영 실적, 작물 생산 실적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 없이 보유 장비 현황에 대하여만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표 5] 중요 시설·장비 지원사업 관리 실태 현황(2018~2021년)

(단위 : 천원)

연번	지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총 사업비 (보조금)	관리실태
계		9개 사업	9개소		3,157,339	
1	2018	○○ 경영체 육성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	○○○○ 협동조합	농기계, 자동포장기 등	794,9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2	2018	○○○ ○○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에너지 ○○점	자동포장시설 라인	233,505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3	2018	○○○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나주시 ○○○○단	드론 구입	123,0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4	2018	○○○ ○○ 경쟁력 강화 사업	○○○	저온창고 등	106,7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5	2019	○○○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조합 법인	승용 정식기 등	968,485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6	2019	○○○○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	○○○○ 협동조합	트랙터 콤바인 구입 등	764,705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7	2019	○○ ○○ ○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 동강단지	드론 구입	100,0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8	2019	○○작물 ○○○ GAP 재배확대 시범사업	○○○	약용작물 재배	16,000	현장 확인만 하고 생산 실적 등 미확인
9	2020	○ ○○○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사업	○○○○ 조합법인	이앙기 구입	50,044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2021. 10. 25. 감사 기간 중에 2019년 ○○○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등 2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승용 이앙기’와 ‘쟁기’가 사용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데도 그 사유를 확인하거나 시정 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기계 장비 등이 지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7.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침에 따르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지원하고 비가림 시설 준공 이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까지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건고추 재배시기에 맞춰 보조사업자가 건고추를 재배하는 지 준공 후 5년간 관리를 하여야 하고, 연작피해 방지 등으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준공 후 6년간 관리하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배원예유통과)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69농가에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표 6] “고추 비가림 사업 사후관리 실태 현황”과 같이 고추 재배 기간인 5~8월에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9년은 주 재배 시기가 아닌 시기인 2019. 12. 16.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거나 2017년, 2018년, 2020년은 사후관리 공문도 시행하지 않는 등 건고추 재배 지원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6] 고추비가림사업 사후관리 실태 현황(2017~2021년)

(단위: 명, m²)

지원연도	지원인원	사업량	사후관리 공문 시행일	사후관리 결과
계	69	130,427		
2017	26	50,059		사후관리 미실시로 건고추 재배 여부 확인 불가
2018	20	34,752		사후관리 미실시로 건고추 재배 여부 확인 불가
2019	11	21,877	2019.12.16.	건고추 재배시기 이후 사후관리로 재배 여부 확인 불가
2020	12	23,739		사후관리 미실시로 건고추 재배 여부 확인 불가

자료 : 나주시 제철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고추 비가림 시설 준공 이후 5년간 건고추 재배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 목적사업 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운영자금 형식으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 이내로 융자금⁴⁾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융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등 시설자금과 포장디자인 개발, 품질개선 등 운영자금으로 집행 할 수 있고, 지원 받은 융자금을 상환완료 이전에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고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을 회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지원된 융자금이 사업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융자금 상환완료 이전까지 융자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4)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2억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5억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 10억원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농업정책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사업을 [표 7]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사업 지원 대상 및 실행인원 현황”과 같이 용자사업 대상자 60명 중 30명이 용자금을 지원 받았는데도 용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상환완료 이전까지 지원목적 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표 7]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사업 지원 대상 및 실행인원 현황(2018~2020년)

(단위: 명, 백만원)

지원연도	지원인원	용자금 실행인원	용자금액	주요사업	비 고
계	60	30	2,833		
2018	19	10	1,005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2018.12.31.
2019	21	15	1,456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2019.12.31.
2020	20	5	372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2020.12.31.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용자금으로 지원된 시설·운영 자금에 대하여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용자금 환수 사항이 발생 될 경우 환수 시기를 놓치게 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9. 농업 시설물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⁵⁾하도록 되어 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업체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용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검사를 하는데 있어 [표 8] “사업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주)○○○○ 등 6개 시공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도 정산검사 시 첨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4,435,1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8] 사업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집행 현황(2019~2020년)

(단위:원)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시공업체	부당지급액					위법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6개소	38,716,140	11,048,620	5,445,917	7,940,563	14,281,040	
1	2019년 ○○○○ 유통활성화사업(건축)	○○○○ 협동조합	(주)○○○○	4,152,030	1,245,610	249,120	581,290	2,076,010	허위세금계산서제출

연번	사업명	보조 사업자	시공 업체	부당지급액					위법내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2	2019년 ○○○ ○ 유통활성화사업(기계)	○○○○ 협동조합	㈜○○ ○○	12,530,100	3,759,030	751,810	1,754,210	6,265,050	허위세금 계산서제출
3	2019년 ○○○ ○○ 유통센터 지원 사업	○○○○○ 협동조합	○○ 건설(주)	3,210,300	963,090	288,927	674,163	1,284,120	허위세금 계산서제출
4	2019년 ○○○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 조합법인	○○ 기업	8,850,000	4,425,000	-	3,540,000	885,000	허위세금 계산서제출
5	2019년 ○○○ 농업기반구축 사업	○○○○ 협동조합	㈜○○ 종합	2,186,300	655,890	262,360	612,160	655,890	허위세금 계산서제출
6	2020년 ○○○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 조합법인	○○엔지 니어링	7,787,410	-	3,893,700	778,740	3,114,970	허위세금 계산서제출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①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예정가격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계약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부당하게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435,100원을 회수하고(시정)
- ③ 앞으로 농업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할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과 농업용 농기계 구입 지원 시 가격 검토를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주의)
- ④ 보조금으로 지원된 중요 시설·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시 현장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및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문서화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업무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도시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2,439개소, 59,368천㎡의 도시계획시설을 [표 1] “나주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같이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나주시 도시계획시설 현황(2015.00.00.)

(단위 : 천㎡)

시 설 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2020. 7. 1.) 대상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493	59,368	1,517	50,573	976	8,795	351	1,944	204	1,439
도로	1,666	9,022	986	6,304	680	2,718	321	1,393	191	1,023
기타 교통시설 (주차장, 궤도 등)	214	541	89	492	125	49	10	7	2	2
공원	176	6,989	53	1,681	123	5,308	11	143	4	113
녹지	168	1,079	139	900	29	179	5	131	4	130
기타 공간시설 (광장, 공공공지)	44	1,148	29	722	15	426	3	171	3	171
유통 및 공급시설	30	329	30	329	-	-	-	-	-	-

시 설 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2020. 7. 1.) 대상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공공문화체육시설	105	5,458	102	5,349	3	109	1	99	-	-
방재시설	72	34,391	72	34,391	-	-	-	-	-	-
보건위생시설	3	37	2	31	1	6	-	-	-	-
환경기초시설	15	374	15	374	-	-	-	-	-	-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보 ○○○는 2013.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상이한 사업 시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시장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도

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나주시는 2015. 00. 00.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표 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과 같이 공고하였다.

[표 2]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2015.00.00.)

(단위 : 개, 억원)

시 설 별	시 행 기 간 별 단 계 별 집 행 계 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적 집행시설(2016년~2025년)							
			계		1단계 (2016~2018년)		2-1단계 (2019~2020년)		2-2단계 (2021~2025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계	976	2,010	949	785	23	211	24	123	902	451
대로	14	381	14	381	2	74	8	87	4	220
중로	49	213	46	213	5	71	6	29	35	113
소로	617	100	602	100	16	66	8	4	578	30
주차장	125		123						123	
공원	123		123						123	
녹지	29	85	27	85			1	1	26	84
광장	12	6	12	6			1	2	11	4
공공공지	3		1						1	
학교	2	1,182								
사회복지시설	1		1						1	
도축장	1	43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도시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 [별표 1] “1·2단계(2018~2021년) 집행계획 중 추진 및 미추진 도로사업 명세”와 같이 1·2단계 집행계획(2018~2021년)의 사업대상 46개소(5,566억원) 중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22개소(1,979억원)로 개소수 대비 48%만 이행한 상태이고, 소로2-47호선 등 24개소(3,587억원)의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별표 2] “단계별 집행계획에 미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집행 명세”와 같이 남평 하노동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 3-1호선) 정비공사 등 17개소(519억원)을 시행 완료 및 시행 중에 있다.

그 결과 공고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기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예상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행정계획의 신뢰에 불신을 초래하였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시·도지사¹⁾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사완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

1)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됨

야 하며,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주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도시과)는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추진완료 및 추진 중인 [별표 3]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사업 추진 명세”와 같은 26개 사업을 살펴본 결과 ○○ ○○○마을 도시계획도로(소3-1호선) 정비공사 등 7개소는 시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고, 실시계획인가 내용도 고시하지 않았으며, ○○ ○아파트~국도○○호선간(중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는 실시하였으나 나주시보에 공사완료 공고를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 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상의 투자계획을 기초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분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기초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도시과)는 [표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중기지방

재정계획 소요액 비교 현황”과 같이 2015. 00. 00. 수립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사업대상과 소요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중로3-1호선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행 중인 사업대상도 도시계획시설 1·2단계 집행계획 사업대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5]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소요액 비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시계획시설 1·2단계 집행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2021년)
소요액	12,113	9,583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우선 투자되어야 할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추진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실효될 우려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재원확보의 한계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집행이 지연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①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한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공사 완료한 “○○○아파트~국도 ○○호선간(중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6건을 나주시보에 공사완료 공고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혐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건설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과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사항 확인 및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표 1]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행정처분 현황”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행정처분 현황

구분	등록기준 미달 등											
	통보(접수) 건수				처리 건수 / 무혐의 건수				미처리 건수			
	계	자본금	기술인력	기타	계	자본금	기술인력	기타	계	자본금	기술인력	기타
계	163	48	37	78	163/124	48/33	37/29	78/62				
2018. 11~12월	6			6	6/5			6/5				
2019년	79	30	16	33	79/65	30/18	16/15	33/32				
2020년	57	18	21	18	57/41	18/15	21/14	18/12				
2021. 09월	21			21	21/13			21/13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서기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건설업 등록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¹⁾, 보증가능금액확인서²⁾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³⁾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건설업자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건설과)는 2020. 4월부터 2021. 3월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로 통보받은 총 10건에 대하여 [별표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혐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명세”와 같이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후에야 처분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중 9건은 감사기간 중 지적되자 2021. 10. 18.부터 10. 27.사이에 영업정지 6개월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 결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건설업체인 ○○○○개발(주)(대표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혐의업체로 통보받은 2020. 00. 00. 이후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혐의업체 나주시 발주사업 수주 명세”와 같이 나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의계약 방법 등으로 8건(계약금액 101,613천

1)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은 업종별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음

2)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계약보증 등(입찰보증 제외)의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며, 금융기관 등은 건설사업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고 있음

3)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4] 시·군 권한위임사항 :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

원)을 수주하였다.

또한 (주)○○○○(대표자 ○○○, 조경식재공사업), (주)○○개발(대표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개발(주)(대표자 ○○○, 도장공사업), ○○○○건설(주)(대표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기술인력) 혐의업체로 통보받은 2020. 00. 00.이후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나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의계약방법 등으로 각각 1건~3건(계약금액 20,978천원~70,512천원)을 수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하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9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3개소에 대하여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⁴⁾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와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건설과)는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로 통보받은 총 3건에 대하여 [별표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혐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명세”와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21. 10. 25.과 10. 26.에서야 2건은 재하도급 건으로 무혐의 처분하였고 1건은 5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행하였다.

그 결과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로 통보받고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를 6개월 이후에 이행한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혐의업체로 통보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KISCON이라고 하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해온 건설산업정보망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역사관광과)

훈계대상자 ① 나주시 ○○○○○과 지방○○주사 ○○○

②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③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9년부터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전라남도로부터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승인받은 “○○○ ○○○○공원 조성사업¹⁾”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18.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약 1년 3개월간 ○○○○○과에서 “○○○ ○○○○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및 특허공법 선정 업무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위 사업의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주사보 ○○○은 2018.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약 1년 1개월간 ○○과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1) ① 위치 : 나주시 ○○동 산 000 일원, ② 총사업비 : 39억원(공사비 35억원), ③ 사업규모 : 9,500㎡

2.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행정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나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심사규정」 제8조에 따르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공사비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및 새로운 공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²⁾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자문을 요청하는 실·과·소장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때 기술자문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 설명서, 설계도서 및 주요공법 심사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자문을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는 계획의 적정성, 규정의 타당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사전조사의 적정여부 등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공사비가 35억원인 ○○○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기본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유지관리 및 사전조사의 적정여부 등을 자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역사관광과)는 ○○○ ○○○○공원 조성사업의 인공암, 분수용 조명, 원격제어시스템 등 3건의 특허공법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공사의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 ○○○○공원 조성사업이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유

2) 건설기술자문위원회 : 건설전문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지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받지 못한 채 착공되어 2021. 5월, 2021. 6월, 2021. 8월 3차례의 설계누락 및 추가공사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시행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법선정 등 업무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신기술(특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편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특허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반영 전에 해당 특허 등의 필요성과 유사기술에 대한 가격 및 성능 등을 검토한 비교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특허·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발주 또는 사업부서)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특허권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및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는 ○○○ ○○○○공원 조성사업에 2019. 00. 00. 인공암(2,193 m²), 분수용 조명(25개), 원격제어시스템 등 3개 항목에 대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표] “공법별 기준 및 업체별 제시내용 현황”과 같이 선정 요청하면서 추정사업비로 1,719백만원³⁾을 제시하였고 2019. 00. 00. 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이행하였다.

3) 추정사업비(1,719백만원) = 신기술·특허공법 비용(548백만원) + 시공 비용(1,171백만원)

[표] 공법별 기준 및 업체별 제시내용 현황

구분	A사	B사	○○○○○○(주) (선정업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함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나주시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발주부서가 제시한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시공비용을 포함한 경제성 검토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를 제시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역사관광과, 건설과)는 2019. 00. 00.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업체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상이하고 시공비용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시공비용을 포함한 경제성 검토 등을 하지 못한 채 ○○○○○○(주)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나주시 종합감사기간 중에 역사관광과와 건설과 업무담당자에게 특허 공법 선정 시 시공비용에 검토에 대하여 의견을 묻자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 ○○○○공원 조성사업의 특허·공법 선정 시 시공비용 등 경제성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아 예산 절감방안이 검토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특허공법 시공물량 및 내역 적정성 검토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신기술(특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

는 특허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반영 전에 해당 특허 등의 필요성과 유사기술에 대한 가격 및 성능 등을 검토한 비교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는 2019. 00. 00. ○○○ ○○○○공원 조성사업에 적용할 특허 공법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면서 총 소요공사비 3,700백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도급공사비 1,533백만원, 관급자재 2,165백만원(수경시설공법 1,719백만원 포함)으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나주시는 기술자문위원회에 특허공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시에는 가격 등을 검토한 비교 자료, 사업별 상세 산출근거 등을 정확히 첨부하여 공정하게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역사관광과)는 2019. 00월 ○○○ ○○○○공원 조성사업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 소요공사비 3,700백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도급공사비 1,533백만원, 관급자재 2,165백만원(수경시설공법 1,719백만원 포함)으로 총 소요공사비 대비 세부내역별 간에 2백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사업별 상세 산출근거와 내역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2021. 10. 29. 감사일 현재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특허공법 자료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허공법이 시공방법과 사용자재, 경비 등이 상이하여 제경비를 포함할 경우 시공비가 동일하지 않아 경제성을 명확히 검토할 수 없었는데도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법이 선정되었다.

그 결과 나주시(역사관광과)는 당초 기술자문위원회에 요청한 추정사업비 1,719백만원에 맞춰 도면, 시공수량 산정 및 설계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특허공법사의 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이 예상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를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 특허공법 선정관련 업무연찬이 미숙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특허자료를 부적절하게 작성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담당팀장 지방○○주사 ○○○와 담당자 지방○○주사보 ○○○, 그리고 나주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 및 특허공법 선정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도시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4,356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는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개발행위 허가 처리 부적정

가.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 확인 소홀

1)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한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고, 시·군에서는 인·허가증의 교부 시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

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도시과)는 2021. 00. 00. ○○면 ○○리 000번지에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지역개발공채 1,221천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1]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지역개발 공채 매입 대상 중 미매입 명세”와 같이 총 43건 114,671천원의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

나. 이행보증금 예치 확인 소홀

1)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0조, 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¹⁾하고,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대신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산정

그런데 나주시(도시과)는 2020. 00. 00. ○○면 ○○리 000번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예치토록 한 이행보증금 26,818천원이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예치되지 않는 등 [별표 2] “개발행위 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미예치 명세”와 같이 총 21건 288,422천원의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지 않고 있는데도 예치를 명령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였고,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

가. 개발행위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조치 소홀

1)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연장이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도시과)는 2018. 00. 00. ○○면 ○○리 000번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 한 개발행위 허가기간(2021. 00. 00.)이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210일 지나도록 의견 청취,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별표 3] “개발행위 허가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38건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짧게는 130일에서 길게는 549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의견 청취

및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나.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보증기간 경과 등 관리 소홀

1)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0조, 제1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 보증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도시과)는 2018. 00. 00. ○○면 ○○리 000번지에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이행보증금 3,204천원의 보증증권 보증기한이 2021. 00. 00.에 만료되어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257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지 않는 등 [별표 4] “개발행위 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보증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20건 230,739천원의 보증기한이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53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난개발 방지와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였다.

4.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상회복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불법 개발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불법 행위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불법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도시과)는 ○○○○공사 ○○지사장으로부터 전력공급설비 보호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면 ○○리 000번지 내 고압 송전탑의 안전문제 때문에 불법 개발행위²⁾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2회의 협조 요청 공문과 1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 받은 건을 처리하면서 토지 소유자는 2020. 00. 00. 광주지방검찰청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이 나왔으므로 실제 불법 행위자를 찾아 불법 개발행위를 원상회복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했는데도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 개발행위가 원상회복 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①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담당팀장 지방

2) 불법 개발행위 : 면적 7,294㎡, 높이 2~3m 절·성토

○○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 가능한 43건 114,671천원은 매입하도록 조치하며, 미예치한 이행보증금 21건 288,422천원을 예치하고, 허가기간 경과된 38건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연장 또는 취소 등 행정 조치하며, 이행보증금 보증기한 경과된 20건 230,739천원에 대해서는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재예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4] 생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협의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훈계대상자 ① 나주시 ○○○○과 지방○○주사 ○○○

② 나주시 ○○○○과 지방○○서기 ○○

③ 나주시 ○○○○과 지방○○주사 ○○○

④ 나주시 ○○○○과 지방○○서기보 ○○○

⑤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 11. 1.부터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51건을 발주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다.

지방○○주사 ○○○은 2018.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업무담당자로,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 ○○천 나들이길(정원) 조성공사, ○○○○ ○○○○ ○○샼터 조성공사(휴게공

간), ○○○○ 상가활성화 기반구축(게이트)사업 및 ○○○○ ○○○길, ○○○길 특화가로 조성공사 업무담당자로, 지방○○서기 ○○○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박물관 주변 ○○○ 도로 정비공사(2차분)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학교 ○○○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담당자로, 지방○○서기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삼거리)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동 ○○○○ ○○○ 주차장 조성공사 업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와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¹⁾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문화재보전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문화재 보존영향 검토·협의 대상 지역)

가) 국가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의 지역

나) 도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까지의 지역

그런데 나주시(건설과)는 ○○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구간이 전라남도 문화재 기념물 제000호(○○ ○○리 지석묘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300m)에 있는데도 건설공사 시행 전에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별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미 이행 건설공사 추진 명세”와 같이 4개 부서에서 10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를 검토·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게 되는 등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한 업무담당자 지방○○주사 ○○○, 지방○○서기 ○○, 지방○○주사 ○○○, 지방○○서기보 ○○○,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교통행정과, 회계과, 도시재생과)

훈계대상자 ① 나주시 ○○○○과 지방○○주사 ○○○

②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③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④ 나주시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20. 4월부터 2021. 3월까지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다.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나주시 ○○○○(주거지주차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보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나주 ○○○○ ○○○○ 및 ○○○하우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 ○○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2차 용역 업무담당자로, 지방○○주사보 ○○○는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나주 ○○○○기념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은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와 같이 설계비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

설계비 추정 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1억원 미만	필수	×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 (우선적용)

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자료집 발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 외¹⁾의 설계를 발주하더라도 설계비 추정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설계 용역 추정 가격에 따라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 공모 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나주시가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적용 대상 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그런데 나주시(교통행정과, 회계과, 도시재생과)는 2020년부터 2021. 9월까지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현황”과 같이 실시설계 용역 5건을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은 채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현황(2020~2021.9월)

(단위: 천원)

용역명	발주 부서	추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기획 업무	사전 검토	공공 건축 심의	설계 공모	수행 평가
○○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과	196,032 (172,000)	2021.04.27.	부	비대상	부	비대상	부
나주시 ○○○○(주거지주차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과	327,173 (289,500)	2020.06.06.	여	비대상	부	비대상	여
나주 ○○○○기념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과	99,750 (87,750)	2020.05.11.	부	비대상	부	비대상	비대상
나주 ○○○○ ○○○○○○ 및 ○○○하우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과	89,730 (78,241)	2020.04.28.	부	비대상	부	비대상	비대상
○○○○ ○○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2차	○○ ○○과	56,160 (56,160)	2021.03.02.	부	비대상	부	비대상	비대상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회계과는 사업부서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의뢰 받아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공공건축물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로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절차 등

을 이행하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의뢰한 업무담당자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보 ○○○,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시민봉사과, 도시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177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토지 5천㎡(연간 1만㎡)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3천㎡(연간 5천㎡, 주택¹⁾ 제외)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²⁾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2018.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는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³⁾에 대하여는 공급 외 목적(직접사용)으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허가 관련 서류 사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제외

2)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개발행위에 대한 최초 허가를 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허가 당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허가에 기초하여 조성된 부동산 등은 타인에게 공급할 수 없음(법제처 유권해석 14-0051, 2014. 5. 9.)

3)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마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를 제출 받아야 함

본과 함께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인허가권자는 공급 외 목적(직접사용)으로 허가 등을 받고 허가 변경(사업주체 변경 포함)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⁴⁾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는 부동산개발업의 무등록으로 인한 개발업자의 처벌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을 22개 시·군 민원부서⁵⁾에 시달하고 업무연찬 교육⁶⁾도 실시하였다.

따라서 나주시는 개발행위의 허가(변경 포함)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및 개발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등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급 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자에게 허가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 등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시민봉사과)는 전라남도(토지관리과)로부터 부동산개발업의

4) 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기준」(2009년 12월, 구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에는 시·도지사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인허가권자의 협조 의무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2015. 6. 15. 위 기준을 개정하여 인허가권자가 관련 증거자료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사후관리 할 수 있게 협조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기준」(2018. 3.)에서도 동일하게 명시

5)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 업무 부서로 시달 : 토지관리과-0000(2019. 00 .00.)호, 토지관리과-0000(2018. 00. 00.)호

6) 토지행정 추진계획 시달 회의 개최 계획 : 토지관리과-000(2018. 00. 00.)호, 토지관리과-0000(2017. 00. 00.)호, 토지관리과-0000(2016. 00 .00.)호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과 토지행정 추진계획 시달회의 등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업무협조 요청 등을 수차례 받고 서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000(2019. 00. 00.)호 공문에 대해서만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담당부서에 공람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로 인하여 나주시(도시과)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른 채 ○○○에게 ○○면 ○○리 000번지 5,302㎡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가 2020. 00. 00.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자의 부동산 매각 현황”과 같이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자가 개발행위 허가 이후 타인에게 매각한 사례가 4건이 발생하였는데도 관련 자료를 전라남도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자의 부동산 매각 현황

(단위 : ㎡)

연번	부동산개발(개발행위) 허가 현황					매각 내역		
	위치	개발내용	면적	신청인	허가일	등기상 소유자	매각일	면적
계	4건							
1	○○면 ○○리 000	태양광 발전시설	5,302	○○○	2019.00.00.	○○○	2020.00.00.	5,302
2	○○면 ○○리 000	동식물관련시설	6,023	○○○	2019.00.00.	○○○	2021.00.00.	6,023
3	○○면 ○○리 000	동식물관련시설	5,731	○○○	2020.00.00.	○○○	2021.00.00.	5,731
4	○○면 ○○리 000 외 1필지	태양광 발전시설	5,452	○○○	2020.00.00.	○○○	2020.00.00.	5,452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4건에 대해서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건설과)

훈 계 대 상 자 나주시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별표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명세”와 같이 동강면 장동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26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¹⁾을 시행계획 수립·승인 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별표 2] “농업용 관정개발 명세”와 같이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경작이 어려운 마을에 관정동 중형관정 개발공사 등 12개소의 관정개발 공사를 추진하였다.

지방○○주사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팀장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용 관정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

1) 농어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준설,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등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에서 사전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건설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별표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미승인 명세”와 같이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그 결과 추가되는 신규 공정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지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 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공사현장 및 준공보고서 등을 정밀히 검토하여 공사가 계약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건설과)는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와 2019. 00. 00. 계약하고 2020. 00. 00. 준공한 ○○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204,396천 원)²⁾에서 비탈기준틀을 설치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비 2,530천원을 과다 지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 정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관정 개발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지하수 착정 굴진시 암질이 변할 때 마다 또는 최소 5m마다 시료를 정확히 채취하여 착정 주상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착정에 대한 설계는 추정 설계한 사항이므로 시공 후 착정 깊이에 대한 주상도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변경(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관정 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착정 주상도에 따라 착정비를 정산하며 준공하여야 했고,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건설과)는 2018.11월부터 2021. 9월까지 [별표 2] “농업용 관정개발 명세”와 같이 “○○동 중형관정 개발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시공사가 시방 규정에 따른 착정 주상도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계와 동일한 주상도를 제출하였는데도 실제 굴착 깊이에 대한 시공사 의견만 확인하여 준공처리 하였다.

그로 인하여 추정치로 설계에 반영된 관정 개발공사 착정비와 실제 착정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의 의견대로 준공 처리하는 등 관정 개발공사의 착정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

2) 사업규모 : 수로관 169m, 포장공 478m, 가드레일 88m 등

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을 때에는 그 영농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4조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며,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하고,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 등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분기별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건설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 농업기반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 등을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 등록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공유의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 ①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반영된 2,530,000원을 회수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안전재난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고막1제 송촌배수문 등 362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 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6조에 민간관리 시설물 주체가 민간관리시설물 등록,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입력·보고하고, 취합기관 및 제출기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승인·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시행을 실시하고, 민간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지정·고시 또는 해지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

정보시스템(FMS) 입력 업무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안전재난과)는 [표 1]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연도별 관리대상 누계 총 1,291개소 시설물 중 3개소의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관리계획을 이행하도록 안내·촉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대상			수 립			미 수 립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계	1,291	476	815	1,288	475	813	3	1	2
2018	244	68	176	242	67	175	2	1	1
2019	341	135	206	340	135	205	1		1
2020	344	136	208	344	136	208			
2021	362	137	225	362	137	225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시설물의 정기·정밀점검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정기점검은 안전 A등급은 반기에 1회, 그 외에는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표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현황”과 같이 실시하되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현황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따라서 나주시는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안전재난과)는 [표 3] “정기점검 실시 현황”과 같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2018년 이후 총 2,297회 중 109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표 3] 정기점검 실시 현황

(단위 : 회)

연도	구분	정기점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정기점검 미실시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계		2,297	854	1,443	2,188	757	1,431	109	97	12
2018	상반기	244	65	179	242	65	177	2	0	2
	하반기	319	125	194	246	54	192	73	71	2
2019	상반기	341	132	209	340	132	208	1	0	1
	하반기	343	132	211	343	132	211	0	0	0
2020	상반기	344	133	211	343	132	211	1	1	0
	하반기	344	133	211	339	128	211	5	5	0
2021	상반기	362	134	228	335	114	221	27	20	7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청사, 교량 등 공공시설물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관리부실에 의한 피해에 노출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정밀점검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건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역사관광과,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 ○○○○공원 조성사업 등 19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가압식 지반보강장치 등 32건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나주시(상하수도과)는 2019. 00. 00. ○○건설(주)(대표 ○○○)와 “○○○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을 168,930만원에 계약¹⁾하고 2022. 00. 00.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신기술·특허공법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 제3절 다. 2)에 따르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기본·실시설계 완료전에 기술보유자(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와 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1) 사업규모 : 우수관로(L=5.5km), 배수펌프장 증설(380ton/min) 등

협약 체결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나주시는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역사관광과,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는 2018. 11월부터 2021. 9월까지 [별표] “신기술 등 적용 추진 명세”와 같이 19건의 신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 ○○○○공원 조성사업 등 7건은 입찰공고를 하면서 계약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였고, ○○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등 9건은 입찰공고문에 특허공법이 반영되었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 협약에 따른 분쟁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특허공법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 2. 다. 2). 다). (3)항에 따르면 공사에 신기술 등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신기술·특허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나주시가 2019. 00. 00. ○○건설(주)(대표 ○○○)과 168,930만원에 계약¹⁾하고 2022. 00. 00.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의 경우 [표] “신기술 등 하도급 체결 후 특허사용료 반영된 사업 현황”과 같이 공사 도급자와 특허 기술 보유자간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표] 신기술 등 하도급 체결 후 특허사용료 반영된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원도급자	신기술·특허권자	하도급자	하도급 계약일	특허사용료
계					26,770
○○○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건설(주)	(유)○○○건설	(유)○○○건설	2020.00.00.	18,383
		○○건설(주)	○○건설(주)	2020.00.00.	8,387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나주시는 위 사업에 반영된 특허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공사에 참여했으므로 설계 반영된 특허사용료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상하수도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 ○○○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에 특허 기술보유자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직접 참여하고 있는에도 특허사용료 26,770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하지 않고 있는 등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26,770,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허공법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 사업규모 : 우수관로(L=5.5km), 배수펌프장 증설(380ton/min) 등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일반수도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상하수도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미 수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수도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와 유수수량¹⁾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 시·군이 시행하려는 일반수도 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 등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군에 대한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

따라서 나주시는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상하수도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물 수요관리 목표 등을 정하지 못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일반수도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가. 시·도지사 변경 인가 및 국고 보조사업 변경승인 미 이행

1) 관계법령(판단기준)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수도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로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 후 인가·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수도시설 확충 개량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환경부)」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²⁾의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에 대해 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2)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0000(2014. 00. 00.) 「2014년 상수도예산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일반수도 사업을 추진 중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환경부 협의 후 시·도지사 인가를 이행하여야 하고, 일반수도 사업 설치 계획 변경 시는 국고보조금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상하수도과)는 [표 1] “일반수도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시설 용량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등 2건의 일반수도 사업³⁾을 환경부 협의 절차 및 시·도지사 변경 인가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표 1] 일반수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km,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시설용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비 고 (시공사)
		당 초	변 경 (증액, 증감율)	당초	변경 (증액 ⁴⁾ , 증감율)		
계	2개소	86.747	99.99	9,156	10,552		
1	○○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55.622	61.602 (증 5.98, 10.7%)	5,262	5,930 (증 419, 8.6%)	2018.08.29. ~2021.08.27.	(주)○○ 종합건설
2	○○○○지구 농어촌상수도 확충공사	31.125	38.388 (증 7.26, 23.3%)	3,894	4,622 (증 563, 14.5%)	2017.06.12. ~2020.10.30.	○○종합 건설(주)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상하수도과는 [표 1] “일반수도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는데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일반수도 국고보조금을 사업 내용과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최초 10분의 1 증가 시 담당자 : (○○지구) ○○○ 주무관, (○○○○지구) ○○ 주무관

4) 불가변동 금액을 제외한 물량변동에 대한 금액만 명기

나. 설계변경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 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 계약으로 추진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상하수도과)는 ○○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등 2건에서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2개 마을⁵⁾ 주민들의 상수도 추가 요청 민원을 반영하고자 사업을 변경하여 상수관로 11.477km를 설치하기 위해 1,458,728천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위 공사의 추가 공사가 아닌 별도 사업으로 일반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시공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여 추가한 12개 마을의 상수관로 공사는 별도 사업이므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시공 중인 회사인 (주)○○종합건설 등 2개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동종 업체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지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 ○○, ○○, ○○ 등 3개 마을 / 3.790km / 598,715천원
○○○○지구 농어촌상수도 확충공사 : ○○, ○○ 등 9개 마을 / 7.687km / 860,013천원

다. 계약심사 미이행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지방계약법」 제1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2조 제8항에 따르면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전라남도에서는 국·도비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별표 1]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범위”에 따르면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물가변동 금액을 제외하고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전라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상하수도과)는 [표 1] “일반수도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받지 않았고, 계약부서에서는 설계변경 계약심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 결과 설계변경 증·감 금액 및 추가되는 신규 공정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일반수

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하수도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상하수도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물 재이용 관리계획 미수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 방안 등이 포함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상하수도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하나 수립하지 않고 있다.

3. 시·도지사 인가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인가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상하수도과)는 [표 1]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구역(1, 2, 3, 4, 12)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2건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환경부 장관 협의 절차 및 시·도지사 인가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표 1]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도지사 인가 여부
계	2개소	오수관로 L=50.39km	29,845		
1	○○○○구역(1, 2, 3, 4, 12) 하수관거 정비공사	오수관로 L=36.64km	22,976	2016.00.00.~2021.00.00.	부
2	○○○○구역(13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오수관로 L=13.75km	6,869	2016.00.00.~2019.00.00.	부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4.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기술진단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상시설⁶⁾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m³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관로 시설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기술진단을 유예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을 제외 할 경우에는 제외 대상시설 입증을 위한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 및 유량 등의 자료를 관할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인정을 받은 경우와 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 시설이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등)인 경우 정기적인 관로운영 성과평가 이행 시 기술진단을 실시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에 따라 하수관로의 경우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전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 청소 및 준설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기술진단 대상인 하수관로(420.6km)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관리 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상하수도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표 2] “하수관

6)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455호, 2012. 5. 12.)에 따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이 포함되었으며 개정내용은 2013. 5. 15. 시행

로 기술진단 미 실시 현황”과 같이 BTL 구역 및 시기 미도래 하수관로를 제외하고 2015년 이전에 준공한 하수관로 200.2km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노후하수관로(산포처리구역) 기술진단 용역” 등 3건⁷⁾으로 101.8km를 실시하고 98.4km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 2] 하수관로 기술진단 미 실시 현황

(단위 : km)

처리구역	연장	(최종) 준공연도	기술진단 대상관로 ⁸⁾			기술진단 실시 여부
			계	분류식	합류식	
계	420.6		420.6	377.6	43	실시 L=101.8km 미실시 L=98.4km
○○○○구역	109.8	2021	109.8	86.8	23	시기 미도래 L=64.2km BTL구역 L=45.6km
○○○○구역	50.6	2012	50.6	50.1	0.5	BTL구역 L=43.9km 실시 L=6.7km(2021년)
○○○○구역	39.9	2018	39.9	39.9		시기 미도래
○○○○구역	26.8	2017	26.8	26.8		시기 미도래
○○○○구역	22.8	2015	22.8	13.3	9.5	실시 L=22.8km(2020년)
○○○○구역	19.1	2010	19.1	15.4	3.7	실시 L=19.1km(2020년)
○○○○구역	12.9	1994	12.9	6.6	6.3	실시 L=12.9km(2021년)
○○○○○○구역	40.3	2014	40.3	40.3		실시 L=40.3km(2021년)
○○○ 마을하수처리구역	98.4	1999~ 2020	98.4	98.4		미실시 L=98.4km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 하수관로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전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 청소 및 준설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시행으로 공공

7) 2020년 : ○○○○구역(○○, ○○) 하수관로(22.0km),
2021년 : ○○○○ 하수관로(40km), ○○ 등 3개소 하수관로(37km)

8) 기술진단 대상 하수관로 연장은 나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도대장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산정

하수도를 적기에 보수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5.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 평가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용역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의 평가 중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공사는 해당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시공평가 결과를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용역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상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는 시공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시공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주시(상하수도과)는 2021.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표 3] “건설기술 용역 시공평가 미실시 현황”과 같이 ○○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용역 3건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3] 건설기술 용역 시공평가 미 실시 현황

연번	구 분	용 역 명	용역 준공일	공사 착공일	평가이행 만료일	평 가 경과 일수
	계	3건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1	기본 및 실시설계	○○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18.00.00.	2020.00.00.	2021.00.00.	257일
2	기본 및 실시설계	○○○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도시침수대응사업	2019.00.00.	2019.00.00.	2020.00.00.	494일
3	기본 및 실시설계	○○○○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020.00.00.	2020.00.00.	2021.00.00.	205일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해 시공평가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용역회사가 다른 건설기술용역 입찰 참가 시 시공평가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①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하수관로 98.4km의 기술진단을 실시하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건의 시공평가를 이행하며(시정)

② 앞으로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주의)